

南北經濟交流協力實務

1995

統一院

목 차

I. 남북경제교류의 추진경위 및 방향	3
II.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추진절차	10
III.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추진현황과 전망.....	59
부 록 : 1.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93
2. 남북경제협력관련 각종서식	111

I. 남북경제교류의 추진경위 및 방향

1. 남북경제교류의 추진경위

정부는 1970년대 경제발전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북한 경제협력을 제안하였는 바, 1973년 3월 14일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제인 및 물자의 교류, 특정부문의 합동개발, 상사의 교환 및 상주 그리고 상품교환전시회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1978년 “6·23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제5주년기념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하여 「남북 쌍방의 민간경제계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남북간 경제협력추진협의기구를 구성하며, 필요시 관계각료회의도 개최하는 등 남북한간 교역·기술·자본협력 등 광범한 경제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한적이 1984년 10월 4일 북적의 수재물자를 인수한 후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1984년 10월 12일 「필요하다면 남북한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상설기구로서 쌍방당국과 경제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남북한 경제협력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이상과 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의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남북한 경제당국 및 민간경제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남북

경제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이 1984년 10월 16일 우리측의 경제회담 제의에 호응해 옴에 따라 마침내 1984년 11월 15일 판문점에서 첫 경제회담이 개최되어 1985년 11월 20일 제5차 경제회담까지 진행되었으나, 1986년 1월 22일로 예정된 제 6차 회담을 불과 이틀 앞둔 1월 20일, 북한은 「팀스피리트 86 훈련실시계획」을 구실로 남북대화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남북경제회담이 중단되었다.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는 과거 냉전시대에서의 남북한 대결구조를 청산하고 개방과 화해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천명한 것이었다.

이러한 「7·7선언」의 정신에 따라 동년 10월 7일 「대북한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을 허용하고,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을 제정하여 남북교류를 허용·지원함으로써 부분적이지만 제3국을 통한 북한과의 교역이 합법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남북교류협력관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도화·정착화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 8. 1 제정시행) 등을 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정부는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중국, 소련과의 수교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남북한간에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책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0년 9월 4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1991년 9월 17일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었다.

특히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1992년 9월 17일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은 「부속 합의서」가 채택·발효됨으로써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시대의 실천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의 합의사항들은 1992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남북한간에 합의했던 분야별 남북공동위 운영을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등을 구실로 일방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그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와같이 「7·7선언」과 그 후속조치들로 이어진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추진노력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각종 법령제정과 추진체계 수립등을 통해 제도화 기틀을 마련하였고, 남북한간에는 기본 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킴으로써 교류협력을 위한 실천사항에 대한 남북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남북교류협력추진의 기반이 조성되게 되었다.

■ '88. 10. 7 대북경제개방조치 요지

① 민간상사 북한물자 교역허용

우리측 민간상사가 북한의 물자를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제3국 물자의 대북한 수출을 중계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② 북한 원산지 표시·상표 부착 허용

북한의 원산지 표시나 상표가 부착된 북한물자의 국내 반입시 원산지 표시 또는 상표를 제거하지 아니한다.

③ 직·간접 교역물자 관세 비과세

간접교역에 의해 우리측으로 직접 인도되거나 단순히 제3국을 경유한 북한원산지 물자에 대해서는 국내간 거래로 간주하여 관세 기타 수입물자에만 부과되는 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우리측 물자의 대북반출시에도 수출에 준하여 각종 수출관련제도를 인정한다.

④ 남북경제인 상호접촉·방문 허용

우리측 민간상사가 제3국에서 상담을 목적으로 북측인사를 접촉하거나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며, 북한 경제인이 상담 목적으로 방한을 요망할 경우 이를 환영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과 신변보장을 등을 약속한다.

⑤ 북한선적 상용선박 입항허용

북한 선적의 선박이 남북한 또는 제3국의 교역물자를 싣고 국내입항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2. 남북경제교류의 목표와 추진방향

남북경제교류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에서 통일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니 만큼, 먼저 장·단기적 목표와 추진방향이 설정되고, 이에 따라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가. 목 표

장기적으로는 북한경제가 일정수준으로 발전하고 남북경제의 협력관계가 증진되어 나감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남북간의 신뢰를 쌓고, 북한의 개방과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며 북한주민들의 생활여건과 자유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남북경제교류를 통해 북한경제가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성이 존중되는 경제체도로 질서있게 전환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남북경제교류를 통해 지향해 나가야 할 이같은 목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 및 제1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그리고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나. 추진방향

이러한 목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 세가지 방향에서 남북경제교류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경제교류는 민족통일경제 건설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간의 경제체제의 차이와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초기단계의 남북경제교류는 필요성과 가능성이 높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부터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때, 남북경제교류는 우선 직교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경공업, 자원개발, 관광분야 등의 협력사업을 통해 상호 신뢰와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구조 개편과 통일경제까지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경제교류는 전반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현실로 볼 때, 지금과 같은 화해·협력의 초기단계에는 경제적 타당성과 함께 정치·안보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남북경제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여기서 병행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경제나 정치·안보 중 어느 한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어느정도 앞서 나갈 수는 있지만,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다시말해 핵문제와 같은 남북간의 현안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느정도의 물자교류와 인적왕래는 계속 추진하되,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제협력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교류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경제교류는 이산가족, 정보, 문화 등 다른 분야 교류협력과도 어느정도 보조를 맞춰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강점인 경제교류를 잘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경제교류는 당국간 협력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간의 체제차이를 고려할 때, 남북경제교류가 일정궤도에 오를 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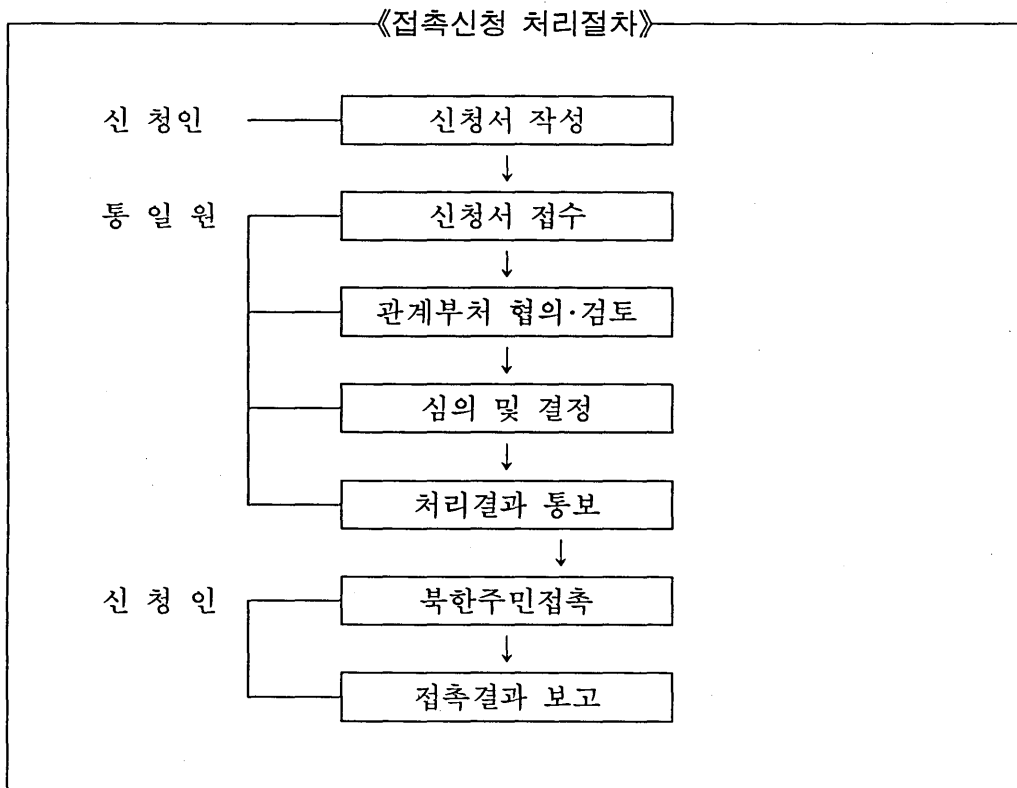
는 어느정도 정부의 「총괄적 통제」가 불가피하며, 점차 남북 당국간에 경제 교류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데 따라 「경제적 통제」에 한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 주도의 자율적 추진」형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경제교류에 있어서도 이윤 등 경제적 타당성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경제 건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결국 당국간 협력하에 추진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II.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추진절차

1. 북한주민접촉 및 북한방문

가. 북한주민접촉



(1) 접촉의 개념

북한방문 협의, 남북물자교역 상담 및 계약, 북한지역에서의 투자상담 등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제3항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접촉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말하며, 이 때 의사교환의 방법·수단·장소 등을 불문하고 남북한 주민 상호간에 어떤 형태로든 특정내용의 의사가 교환되었다면 접촉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제3자)을 통하거나 전화, 우편, FAX, TELEX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모두 접촉에 해당된다.

(2) 접촉승인신청

남북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협의를 위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하는 자는 접촉예정일 20일 전까지 제반 구비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비 서 류》

- 북한주민접촉신청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접촉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1부
- 회사소개서 등 참고자료 1부
- 본인의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1부

북한주민접촉신청은 우편이나 대리인이 신청해도 무방하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되는데, 접촉승인의 경우에는 접촉인, 피접촉인, 접촉목적, 접촉방법, 승인유효기간 등이 적시되며, 접촉불허의 경우에는 불허이유가 적시된다.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신청인 인적사항, 피접촉예정인 인적사항, 접촉목적, 접촉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원진술서」는 신청인의 신원사항을 작성항목에 따라 직접 기재하고, 우측 상단에 신청인 사진을 부착해야 한다.

「접촉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는 신청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경협사업과 접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는 서류로서 신청인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3) 접촉안내교육

통일원장관은 북한주민접촉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접촉인에게 안내교육을 받을 것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안내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 교육은 북한주민접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관련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남북한간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목은 남북관계현황, 북한실상, 접촉시 행동요령, 기타 접촉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4) 접촉결과보고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승인유효기간 내에서 북한주민과 접촉하거나 상담을 할 수 있으며, 매 접촉 후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원장관에게 접촉결과를 10일 이내에 6하원칙에 의거 정확하고 자세하게 작성·제출해야 한다.

(5) 사후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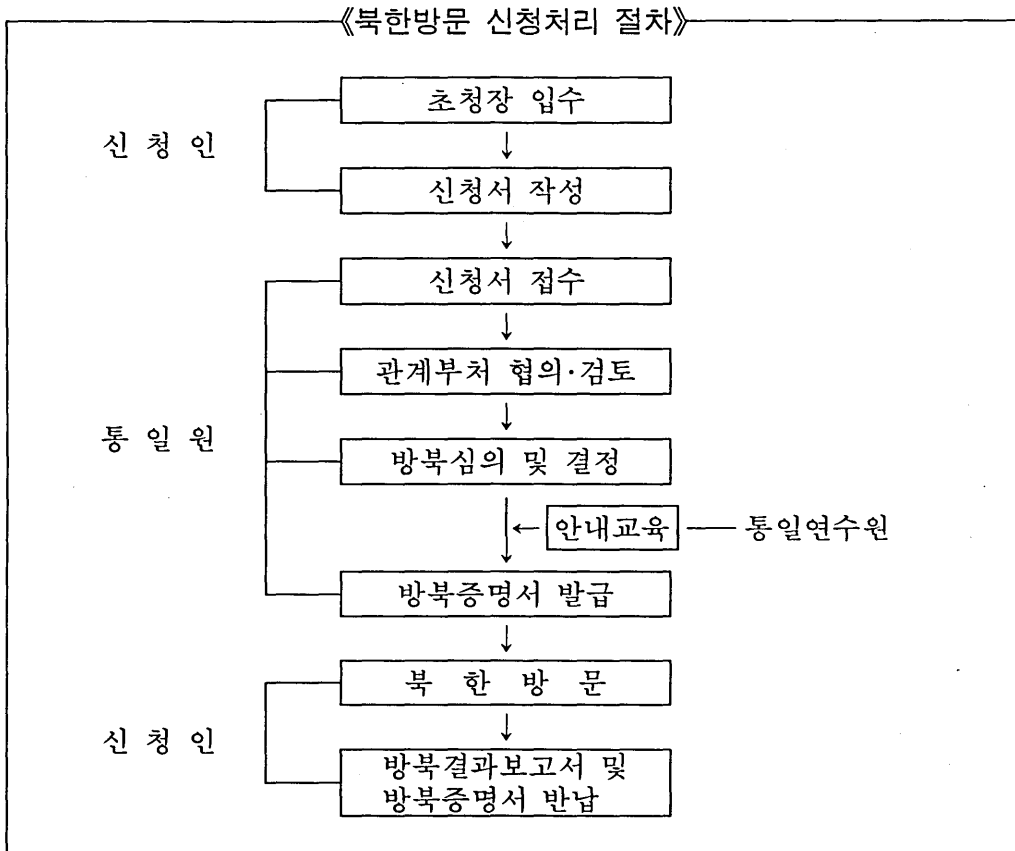
북한주민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절차를 밟아 사전에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하고 접촉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후 신고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접촉 후 7일 이내에 접촉사실을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면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후 신고사항》

- ①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②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③ 외국에서 가족(8촌 이내의 친·인적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
- ④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⑤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나. 북한방문



(1) 북한방문 승인신청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3국 또는 관문점을 통해 북한 지역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예정일 30일 전까지 제반 구비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비 서 류》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사진(반명합판 4매)
- 초청장(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증서류) 1부
- 방문계획서 1부
- 기타 참고서류
- 본인의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북한방문을 위해 제출하는 초청장에는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초청목적, 초청기간, 피초청인성명, 초청인(기관)서명날인, 발급일자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직 남북한간 상호 신뢰의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방문한 우리기업인이 사고를 당한다거나 또는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방북자 개인을 위해서나 남북한 관계발전을 위해서나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우리 기업인의 북한방문을 허용하기 전에 북한을 방문하는 기간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보장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남북한간에 통행합의서가 채택된다면 북한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이런 서류의 제출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

방문신청서는 방북목적의 타당성, 북한당국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0일내에 처리된다.

북한방문승인을 받은 자는 통일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방북자 교육을 이수한 후에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2) 방북자 안내교육

북한방문승인을 받은 자는 방문 전에 북한방문 안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으로, 남북관계현황, 최근 북한동향, 북한실상, 방문시 행동요령, 기타 방문목적과 관련된 전문교육(대북투자 협의시 유의사항 및 북한의 투자환경 등)을 실시하게 된다.

(3) 방문기간

방문기간은 방문목적과 북한측의 초청내용에 따라 적정기간이 부여된다. 방문기간은 최장 1년 6월까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처음 승인된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도 있다. 방문기간 연장은 소정의 「방문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해야 한다.

만일 연장한 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북한방문증명서」를 새로이 발급받아야 한다.

(4) 출입심사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는 출입장소에서 출입심사 공무원에게 소정의 「출입신고서」와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고 출입심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심사는 신원확인, 휴대물품 등의 검사, 검역,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등이 이루어진다. 특히 휴대물품은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통일원고시 제90-1호, 1990. 8. 13)에 따라 반입·반출이 불허되는 물품과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5) 방문결과보고 및 방문증명서 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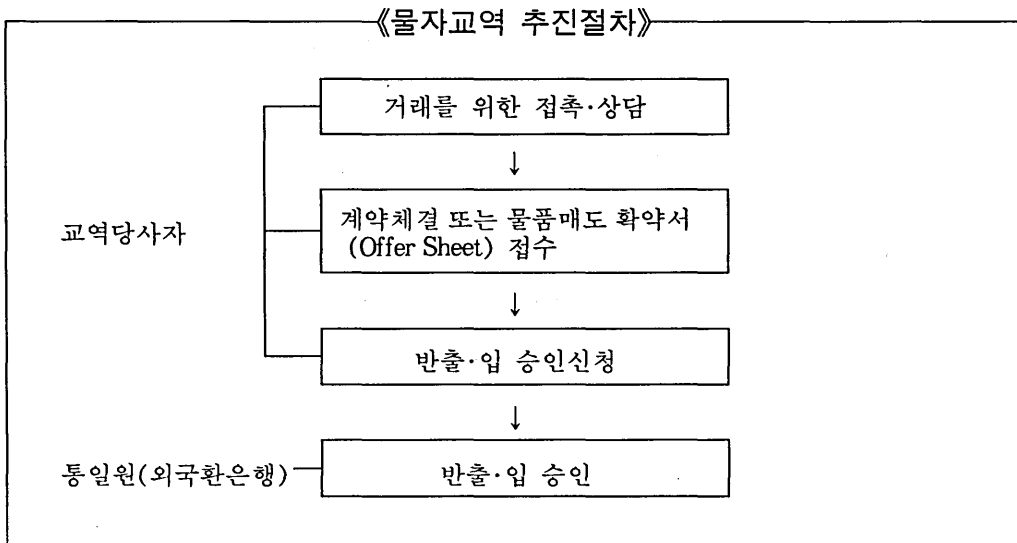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방문일정에 따라 북한지역을 방문하여야 하며, 귀환 후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북한방문결과를 10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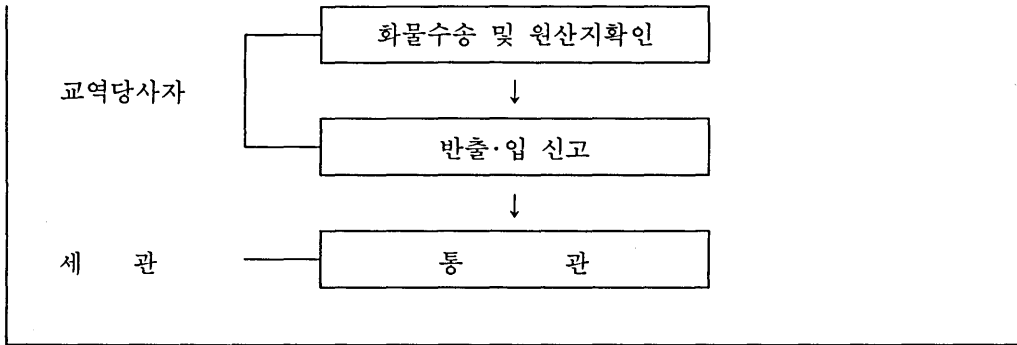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안전 등을 위협하게 하거나 남북한 관계개선을 저해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방북승인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여야 한다.

북한방문증명서는 방문을 마치고 귀환할 때 반납하여야 한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귀환할 경우는 출입장소(판문점 등)에서 반납해야 하고, 제3국을 통해 귀환할 경우에는 통일원에 반납해야 한다.

2. 남북한 물자교역

가. 일반적인 반출·반입





(1) 물자교역의 개요

법 제2조(정의)에서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하며,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칙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도 포함)을 말한다.

법 제12조(교역당사자)에서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 포함)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며, 통일원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 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등록을 한 자이면 남북물자교역을 할 수 있으나, 유통질서확립, 보건·안전상의 사유로 인하여 국내법체계에서 특수한 자격을 요구하는 품목을 교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품목의 취급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특수취급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 식품류 : (수입)식품판매업 신고
- 주 류 : 주류수입(중개업) 면허 소지
- 북한도서 및 정기간행물 : 문화체육부 허가와 등록
- 삼산화 비소(Arsenic trioxide) : 독극물 수출입업 등록
- 한약재 : 의약품 수입자 확인증 소지

남북교역대상물품의 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

통일원고시 제95-1호(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한 반출·반입 제한승인품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이며, 다음 각 호의 1이외의 품목은 반출·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본다.

《반출·반입 제한승인품목》

- ① 대외무역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통합공고에서 수출입 제한이 있는 품목
- ② 반출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탁가공용 기계·장치·설비가.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교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연계교역으로서 대응물품이 반입제한승인품목인 경우
나. 1회 미화 100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미화 300만달러 이상의 반출
다. 설비반출대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생산물품이나 가공비 등으로 상계하는 경우
- ③ 반입물품으로서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한 것)
- ④ 반입물품으로서 별표 1에 계기한 물품(별표 1; 통일원고시 제95-1호 참조)
- ⑤ 무상으로 반출·입하는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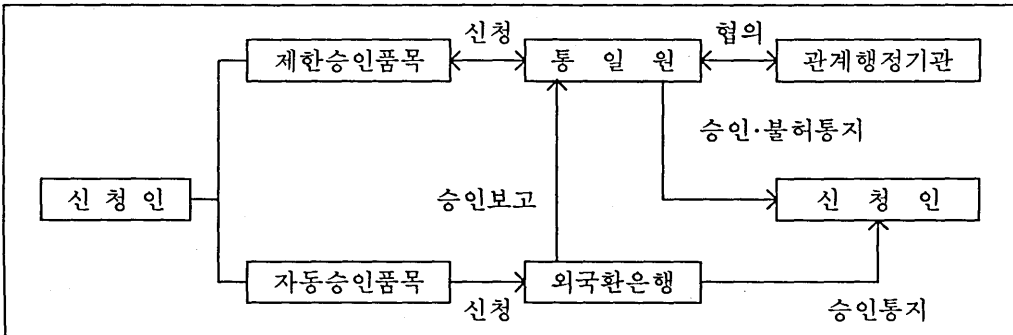
(2) 접촉 및 상담

북한의 교역당사자와의 접촉 및 상담방법에 있어서는 제3국 무역상(중개인) 및 해외동포를 통한 간접접촉과 제3국 중개인의 중재로 제3국에서 남북한 교역당사자간 직접접촉에 의한 상담 또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3국 중개인이 먼저 북한측 거래당사자와 상담 또는 계약을 진행한 후 이를 우리측 교역당사자에게 제시하여 거래를 성립시키거나, 우리측 교역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북한측 거래당사자와 상담을 추진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간접교역형태와 제3국 중개인의 중재로 남북한 교역당사자가 제3국에서 직접접촉·상담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직접교역형태로 구분된다.

주요접촉 및 상담장소로는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남북한 교역당사자들의 직접접촉은 주로 중국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 반입승인



북한물품을 반입하려면 우선 반입하려는 물품이 통일원고시 제95-1호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에 관한 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반입이 제한되는 품목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반입자동승인품목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의 반입승인을 받고, 반입제한승인품목인 경우에는 통일원 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물품 반입승인신청서에 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반입대행계약서(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해당자), 무역업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승인기관에 제출, 반입 물품의 명세, 선적항, 도착항, 송화인, 대금결제방법, 유효기간 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입자는 반입유효기간 내에 반입물품의 통관은 물론 반입대금도 완전히 결제해야 하는데, 동 기간 내에 반입통관 또는 대금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반입승인을 받은 후 상대방과의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원래 반입승인 받은 조건대로 반입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때에는 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반출승인

반출의 경우에도 반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출제한승인품목과 반출자 동승인품목으로 구분하여, 반출제한승인품목은 통일원장관, 반출자동승인품목은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출계약이 체결된 후 반입자로부터 신용장이 내도하면 반출자는 신용장이 계약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 반출승인을 받는다.

신용장은 반출자가 반출을 이행한 후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반입자 거래은행(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결제를 보증하는 비유통 증권이다.

신용장을 수취한 반출자는 대금회수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내용과의 일치 여부, 기타 특수한 신용장조건으로 대금회수의 위험을 초래하는 조건이 없

는지 주의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반출자는 개개의 반출계약건마다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출승인은 적법한 반출이행과 이에 따른 대금회수를 관리하는 제도로서 승인권한은 통일원장관에게 있으나 대부분 외국환은행장에게 위탁하고 있다.

반출품목은 대부분 자동승인품목이기 때문에 외국환은행에서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가 많은 바, 이 때 반출자는 동 물품이 북한으로 반출(제3국 단순 경유 포함)되는 것임을 밝혀 남북한 교역 대상물품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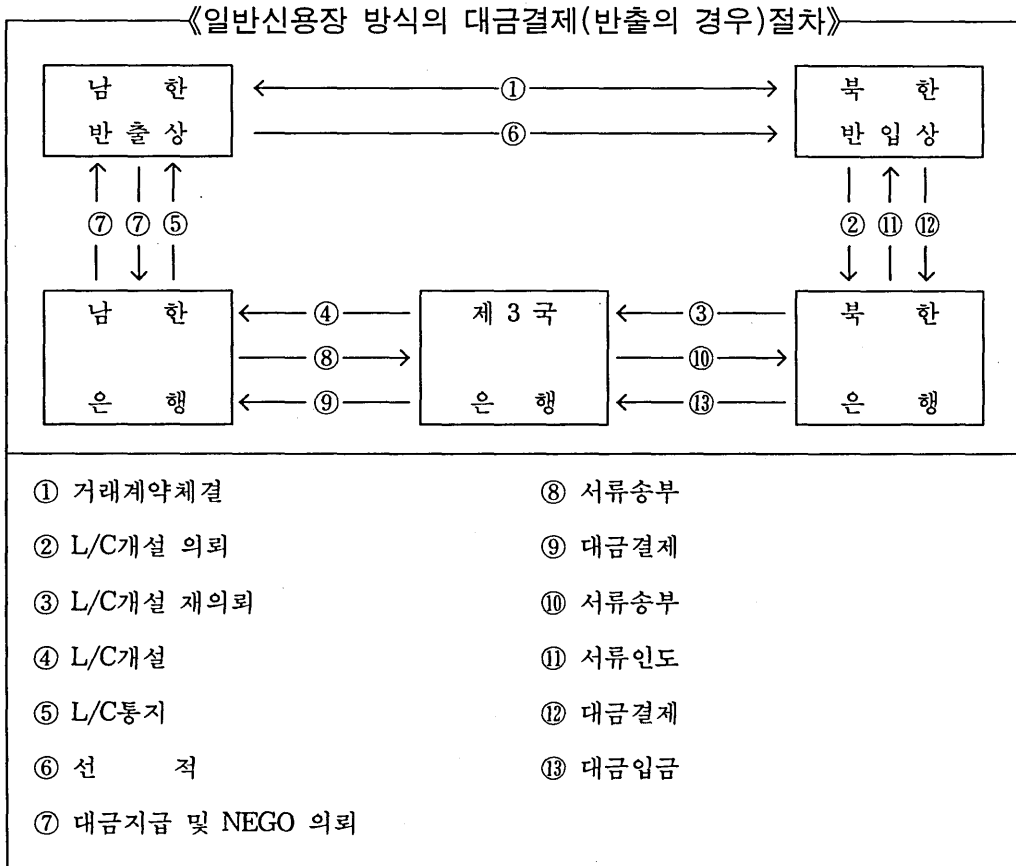
(5) 대금결제 방법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재정경제원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주요 결제방법으로는 신용장방식, 물물교환, 대응구매, 청산결제방식 등을 들 수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남북물자교역의 대금결제방법은 일반신용장방식으로서, 제3국 중개상 앞으로 신용장이 개설되며, 환거래 발생없는 상품의 직접교환거래인 물물교환방식은 하나의 계약서로 거래가 성립되고 신용장개설은 불필요하다.

남한의 반출업자가 남한물품 반출에 대응하여 북한의 반입업자로부터 북한물품을 반입함으로써 반출입을 연계시키는 거래인 대응구매방식은 반출과 반입의 계약서는 각각 별도 작성되는데 두 계약서는 의정서를 통해 상호 연결된다.

1992년 9월 17일 발효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 제8항에서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6) 화물수송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3조 제5항에서 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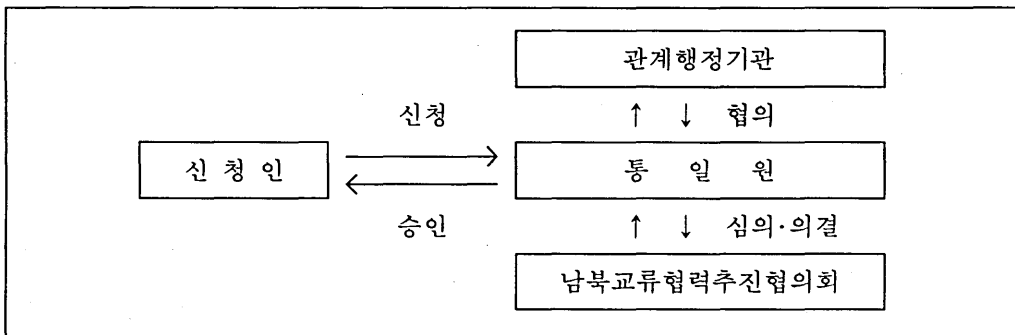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어 이의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 물자의 수송은 제3국적 선박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들 선박들은 제3국 항구를 경유하거나 공해상을 통해 직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한항에서 출발하여 북한항으로 들어가는 선박은 제3국 항구를 경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북한항에서 출항하여 남한항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공해상을 통해 직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 항공기, 철도, 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장비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및 영 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과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 관한 고시」(통일원고시 제94-1호)에 의하여 남북한 수송장비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한주민(법인포함)은 물론 외국인(법인포함)도 남북한간에 선박 등 수송장비(국적불문)를 직운행할 경우에는 승인대상이 되고, 제3국 항구(홍콩, 중국, 일본 등)를 경유하여 남북한간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는 승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이며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 비 서 류》

-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서 1부
- 운행계획서(운행경위 포함) 1부
 - 운행경위에는 운행일자, 운송경로, 수송화물내역, 화주 등의 내용 기재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제원내역서 1부
 - 사용할 수송장비의 미확보 시에는 확보할 수송장비의 제원과 확보방법 및 기한 등을 기재
 - 선박의 경우는 선박국적증서
-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가능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통일원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선박의 경우, 북한→남한간 부정기운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합의서 또는 북한당국의 입항허가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소정의 운행안전교육이수 증빙서류 각 1부
 - 수송장비 운행요원 중 남한주민이 있을 경우: 방북승인과 소정교육을 받고 이수필증도 제출
- 대리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대리신청의 경우)
-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반출입 물품의 통관

① 물품의 장치

• 반입물품의 장치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일반수입물품과 같이 관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등 보세구역이나 통관장 등 지정된 곳에 장치하여야 한다. 통관장이라 함은 육지로 연결된 국경을 통하여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관검사 또는 통관을 하기 위해 관할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로서 향후 남북직교역이 실현될 경우 육로를 통한 물자수송 및 통관창구로서 많이 활용될 전망이다.

· 반출물품의 장치

북한으로의 반출물품은 당해 물품의 제조공장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141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반출 또는 부정환급등 우범성 정보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 업체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 관할내의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게 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을 반출입하는데 소요된 운송비 등 관련비용은 반출자(화주)의 부담으로 하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후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세관장에게 반입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반입물품 통관

북한에서 반입한 물품의 반입통관절차는 일반수입통관절차를 준용하므로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관세청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면허를 받아야 한다. 북한산 물품의 경우 관세 비과세 처리됨에 따라 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전량 검사 후 면허처리하고 있다.

참고로 북한에서 직반입한 물품의 반입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양식 사용)
- 반입승인서(자동승인물품인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반입승인서, 제한승인 품목인 경우 통일원장관의 반입승인서)
- 가격신고서(Invoice, 보험증서 포함)

- 선하증권사본
- 최근 2개월간의 선장확인 선박항해일지
- 원산지증명서
- 기타 검역물품인 경우 당해 검역증(식품인 경우 식품검사 합격증) 및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서류

아울러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한 물품의 경우에는 직반입한 경우 제출서류의 선하증권사본, 선박항해일지만을 아래와 같은 서류로 바뀌서 제출하면 된다.

-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아국까지의 선하증권 일체
- 제3국의 세관 등 권한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단순경유증명서

《경유국별 단순경유 입증서류》

- (1) 홍콩
 - 홍콩상공회의소 발행 “재수출원산지증명서”
- (2) 일본
 - 일본세관 발행 “적려허가통지서(積り許可通知書)”
- (3) 중국
 - ① 내륙운송의 경우
 - “과경화물보관단(過境貨物報關單)”
 - 국외(북한)에서 출발하여 기차로 중국대륙을 통과하여 국외로 운송하는 화물
 - ② 항공 및 해상운송의 경우
 - “진구화물재화청단(進口貨物載貨清單)”
 - 국외(북한)에서 운송을 시작하여 중국 항구 또는 공항을 거쳐 원운송기구로 계속 국외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한 증명서

· “외국화물전운준단(外局貨物轉運准單)”

— 중국에서 운송기구를 바꾸어 국외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한 증명서

③ 중국 내 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에 일시 보관 후 재반출되는 경우

· “진구화물보관단(進口貨物報關單)”

— 이러한 물품은 전구화물(轉口貨物)이라 하며, 증명서의 무역방식란에 전구무역(轉口貿易)이라는 표시를 해야 함

③ 관세 등 제세부과

· 관 세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물품 중(제3국을 단순히 경유한 물품을 포함한다)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물품 중 원산지가 북한 이외의 국가인 물품 및 제3국에서 수입통관된 후 반입된 물품은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내국세 등

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통세 등 내국세는 반입통관시 세관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시 과세표준에 사용하는 물품의 가격은 일반수입 물품과 같이 「관세평가시행세칙」 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된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실제 지불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반출물품 통관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수출품과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양식 사용)을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레이다,

고성능컴퓨터, 야간투시경 등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상(통상산업부 고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의 부정유출가능성에 중점 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⑤ 관세환급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수출물품과 같이 당해 물품의 원재료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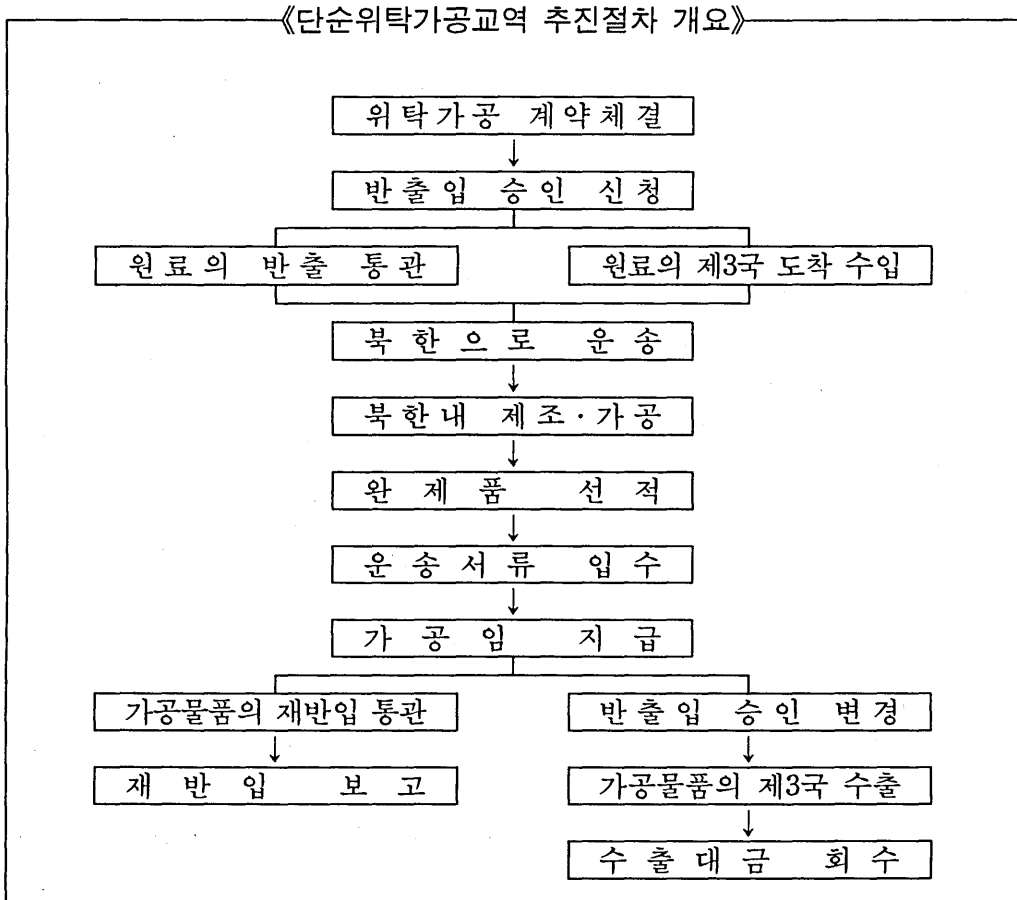
⑥ 수출입승인 면제대상 남북교역물품의 통관처리

수출입승인 면제대상물품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본격적인 교역을 위한 예비적, 부수적 거래의 성격을 띠며 신속한 통관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일반 수입물품의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화주의 수입사유서에 의거 심사 후 신속히 통관하여 주고 있으며, 그 이상인 경우에도 반입물품이 자동승인품목이고 그 수입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사유서에 의거 신속히 통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교역물품인 경우 반입물품이 비과세인데다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규정이 없어 그동안 통일원장관의 무환물품반입 확인서를 제출받고 통관처리하여 왔는 바, 통관신속화 등을 위하여 1994년 2월 15일부터는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통관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탁가공교역



(1) 위탁가공교역의 개요

대북한 위탁가공교역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거래로서 가공입지급을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의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동 완제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교역을 말한다.

위탁가공은 가공할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하여 이를 가공·반입하는 것으로 “가공입”이 주요 매개변수가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흔히 입가공이라고 불리워 지기도 한다.

(2) 위탁가공교역에 의한 반출입승인

위탁가공 대상물품이 반입 제한승인품목인 경우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입 자동승인품목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반출입승인 요령은 다음과 같다.

-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반출물품과 반입물품의 품목분류(HS 10단위)가 동일한 때에도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반출입의 승인을 할 수 없다.
- ② 승인기관의 장은 반입유효기간 내에 가공물품을 재반입하고 반입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반입면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반입보고를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승인기관의 장은 반출물품을 가공한 후 현지 또는 제3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 한하여 재반입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
 - 당해 가공물품이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이 허용되는 품목일 것
 - 당해 가공물품의 수출대금은 당초 그 반출을 승인한 외국환은행의 장을 통하여 회수할 것재반입 조건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현지 판매 또는 제3국에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용장 또는 계약서 등의 자료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위탁가공용 기계·장치·설비의 반출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물물교환, 구상교역, 대응구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연계교역으로서 대응물품이 반입제한승인품목인 경우
- 1회 미화 100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미화 300만달러 이상의 반출
- 설비반출대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생산물품이나 가공비 등으로 상계하는 경우

(3) 위탁가공교역의 형태

위탁가공교역에는 단순위탁가공교역과 생산설비 및 기술제공을 통한 위탁가공교역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① 단순위탁가공교역

- 가공대상 원·부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산자에게 공급
- 위탁 생산자의 가공
- 가공제품의 수령 후 가공임 지급

② 생산설비 및 기술제공이 수반되는 위탁가공교역

- 가공대상 원·부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산자에게 공급
- 가공 생산설비 및 기술제공, 기술인력 파견→합작기업 설립을 통한 위탁가공교역
- 위탁생산자의 가공
- 가공생산설비 및 기술제공의 대가로 가공제품 수령

※ 설비제공형 위탁가공은 그 거래의 성격상 교역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경제협력사업(투자)으로도 분류할 수 있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래이다.

즉 설비제공형 위탁가공이 북한의 합작법에 따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경제협력사업(투자)으로 분류되고, 그 이외의 설비제공형 위탁가

공은 교역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외국환관리규정 제12-4조에 의하면 투자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에 걸친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은 해외 직접투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투자지분의 참여가 있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설비제공형 위탁가공은 경제협력사업(투자)으로 분류되고, 그 이외의 설비제공형 위탁가공은 교역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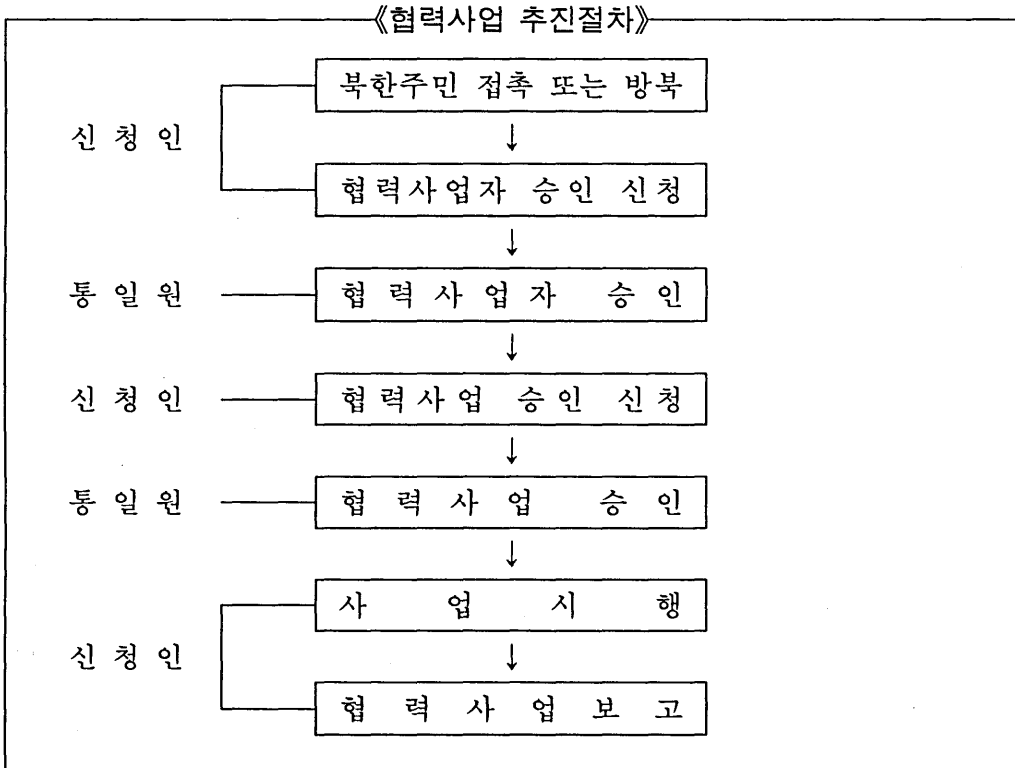
(4) 북한의 관련법규

북한은 1992년 10월 5일 제정한 합작법에서 위탁가공교역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동법 제2조에서 합작기업의 개념을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 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동법 제13조에서는 「외국투자가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남북경제협력사업 및 사무소 설치

가. 협력사업



(1) 협력사업의 개념 및 유망분야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의 주민인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은 누구나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과학, 음악 등과 같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예시되지 않는 분야도 이 법에 의거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남한과 북한 기업간의 협력사업은 물론 남·북한과 제3국 기업간의 다자간 합작투자사업까지 추진할 수 있으며 투자자금 전액을 우리측 기업에서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에도 국내 모 기업을 주체(협력사업자)로 한 대북한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협력사업 가능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유망분야를 살펴 보면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 및 북한 내 투자여건 등을 감안할 때, 합작투자 초기단계에서는 남북경제구조상의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우리측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측의 노동력을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소규모 경공업분야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합작투자를 위해서는 북한의 투자환경, 투자보장에 관한 제도적 장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대북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과거 5차례 개최되었던 남북 경제회담 결과, 대일 민간경제협력 유치희망분야, UNIDO측에 투자유치를 희망한 분야 및 조총련 등 해외기업과의 합영사업 현황 등을 분석해 보는 것도 투자대상 선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남북한경제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한 합작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를 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석탄, 철광석, 아연 등의 지하자원 공동개발, 금강산·설악산지역의 관광자원 공동개발 및 수산업 분야에서의 합작사업 추진이 매우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2) 협력사업자 승인

협력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통일원에 협력사업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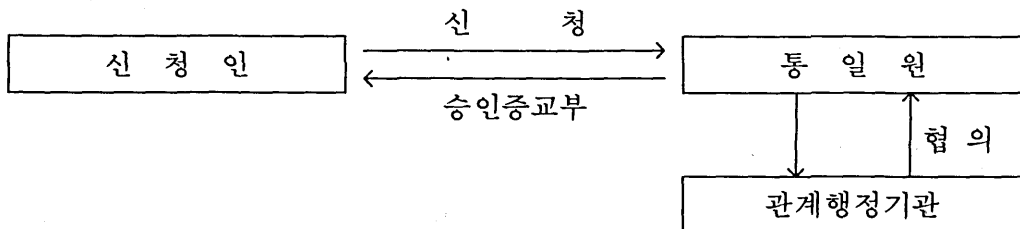
이 때 신청자는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승인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향후의 대북투자사업을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협력사업자 신청서는 본인(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이 직접 제출함이 원칙이나 그 업무를 위임받은 자의 대리신청 및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협력사업자 승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통일원장관이 승인하며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중요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 경제협력조정위원회에서 사전검토·조정 절차를 거침으로써 협력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협력사업자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부득이 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협력사업자 승인요건으로는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실적이 있어야 하고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승인을 할 경우에는 협력사업자 승인증을 교부한다.

협력사업자 신청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 비 서 류》

-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 1부
- 협력사업의 개요설명서 1부
- 의향서 사본 1부
- 사업실적 증명서류 1부
- 신청일기준 3년 이내 기간중 가장 최근 작성한 대차대조표 1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타 자본금상태 증명서류 1부)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의 경우)
- 기타 통일원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3) 협력사업자의 방북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승인 이후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관계자가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력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협력사업 추진 목적의 수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승인신청시에는 영 제10조 제1항의 서류 이외에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및 향후 1년 6개월간의 방북예정서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수시방북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방북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매 귀환 후 북한방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매 방북시마다 북한방문신고서와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또는 초청장원본 등을 방북예정일 7일 전까지 통일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협력사업 승인

협력사업자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협력사업마다 승인요건을 갖추어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자는 협력사업승인신청서에 사전접촉 또는 방북을 통한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함께 사업계획서,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북한당국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승인 이후 바로 해당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협력사업은 그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협력사업자의 능력으로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으며 남북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승인하게 되며,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협력사업 승인요건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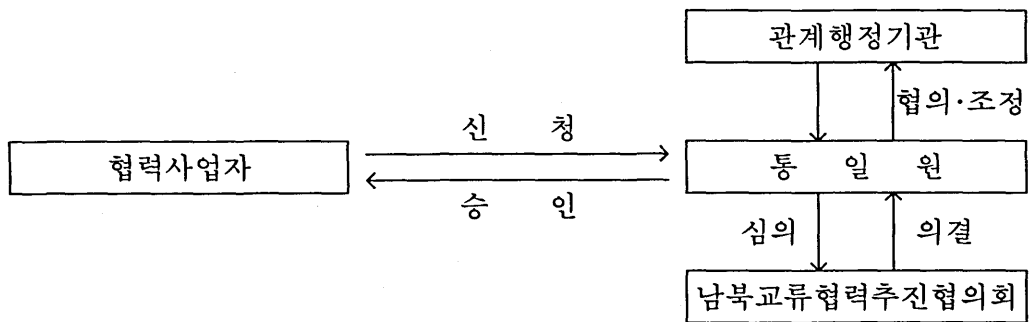
-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가능할 것
-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가 부합될 것
-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협력사업자로부터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일원에서 심사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협력사업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이며 협력사업을 승인한 경우에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승인 사실을 협력사업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해당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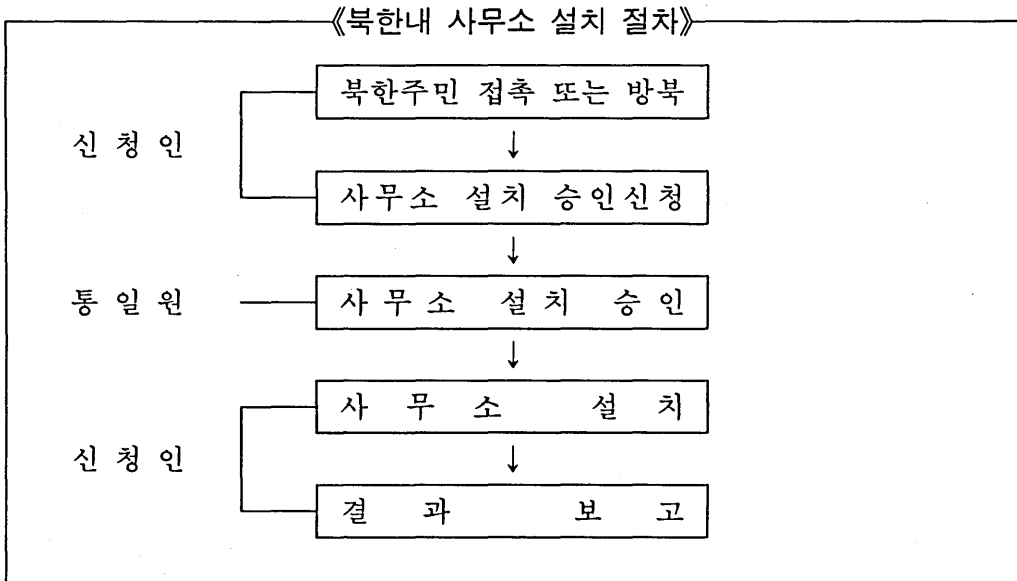
협력사업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 비 서 류》

- 협력사업승인신청서 1부
- 협력사업자 승인증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1부
- 북한당국의 확인서 1부
-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현지타당성 조사결과(수송, 전력, 통신, 항만, 용수, 노동력 등을 포함)1부
- 단독투자 또는 제3국 주민과의 합작투자의 경우 북한당국에 제출할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1부

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1) 개요

① 설치목적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불문)을 설치한다.

② 기능

사무소는 ㉠ 국내기업과의 통신연락 등 업무연락 ㉡ 시장조사, 연구활동, 경제기술자료의 소개 및 자문활동 등 비영업적 활동 ㉢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의 북한측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체결, 대금결제, 물자의 인도·인수 업무 등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

다. 다만, 남북한 당국이 사무소의 기능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한 때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2) 사무소설치 승인 신청

북한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그 승인요건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승인요건

-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해 사무소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
-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② 구비서류

- 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 1부
- 법인·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 1부
- 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 1부(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
- 사무소설치 및 유치활동에 소요될 외화경비 명세서와 경비조달 계획서 1부
- 사무소운용과 주재원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요물품 반출명세서 1부
- 사무소설치에 관한 북한측 관계자와의 합의경위 및 결과 1부
-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사무소설치 승인

통일원장관은 북한지역 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하게 되는데, 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일원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상주기간을 연

장하려는 경우에는 상주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상주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재원의 북한방문

통일원장관은 사무소설치 승인 이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소파견 주재원이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재원의 신청에 의하여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수시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류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 수시방북 필요사유서 1부
- 향후 1년 6월간의 방북예정서 1부

②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방북자는 영 제17조에 의거 매 귀환 후 증명서를 통일원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매 방북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북한방문신고서 1부
-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또는 초청장(원본) 1부

③ 통일원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 방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시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4) 사무소 업무의 보고

① 사무소설치 완료 보고

사무소설치 승인을 받은 자는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

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사무소설치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반기별 보고사항

사무소의 반기별 활동사항을 반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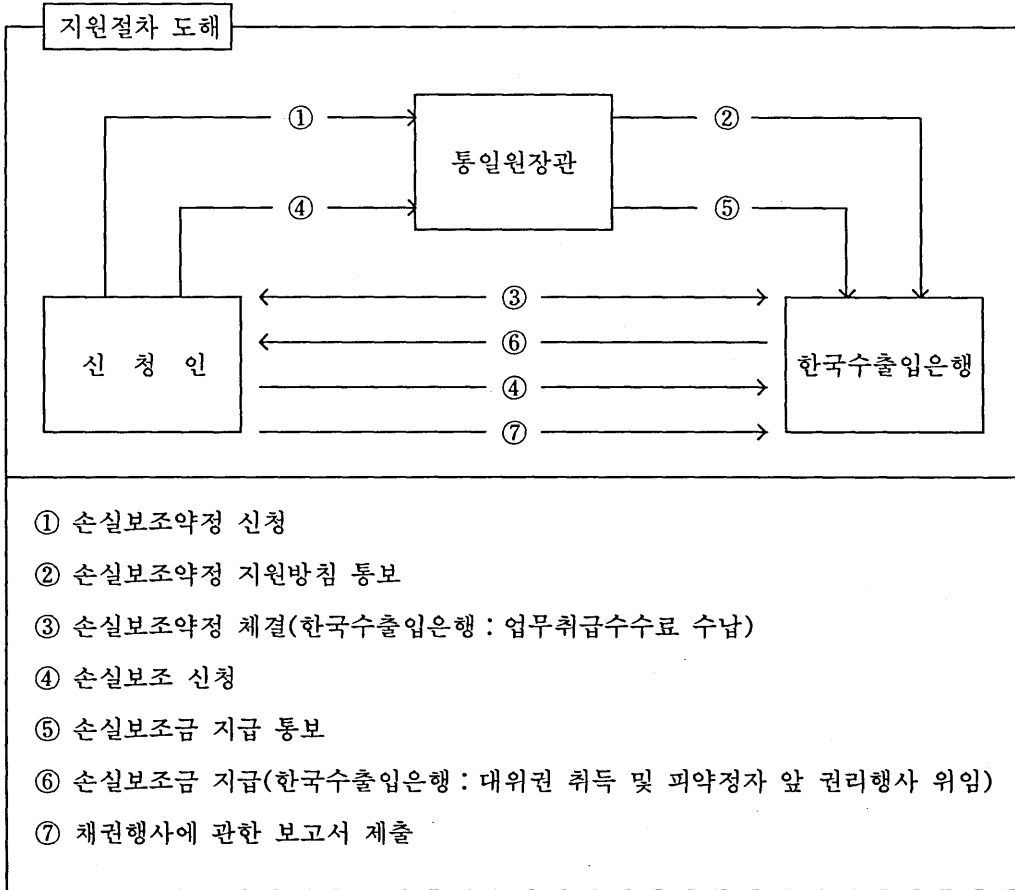
- 본 기업의 위임업무 처리내역
- 주요인사 면담 및 내방
- 북한기업에 대한 자문, 경제·기술자료 소개 등 활동내역
- 주재원의 남한 또는 제3국 방문내용
- 사무소 및 주재원의 등록증(매년마다 북한당국이 재발급하는 것에 한한다)
- 특이사항 및 기타 참고자료

4. 남북협력기금 지원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제9조에 의하여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손실보조·융자·채무보증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지원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융자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자금종별	지 원 한 도	지 원 조 건
반출·입 자금대출	계약금액의 90% 범위 내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사업별로 결정
경제협력 사업자금 대 출	계약금액의 90% 범위 내	이자율 : 연 5.0% 기 간 :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 내 포함) 담 보 : 남한 내 담보 또는 사업관 련 주식, 채권, L/C, L/G, P/N 등
손실보조	교역·경제협력사업관련 손실의 90% 범위 내	업무취급수수료 : 0.1% 대금결제 및 사업기간 이내
채무보증	피보증인과 융자은행간 계약상 보증한도 범위 내	이자율 : 통일원장관이 정함 기 간 : 당해거래 융자기간에 30일 가산기간 이내 담 보 : 남한 내 담보 또는 사업관련 주식, 채권, L/C, L/G, P/N
금융기관 손실보전	손실금액 범위 내	
금융기관 융자자금 미결제 채권인수	융자취급 범위 내 대금결제구좌의 미결제 채권액 범 위 내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 의, 별도로 정함
북한원화 인수매각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 별도로 정함	
주민왕래 지원자금	소요자금 범위 내	무 상
문화학술 체육협력 지원자금	소요자금 범위 내	무 상
민족공동 체 지원	남북한 당국간합의 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결정에 따름	

가. 손실보조



(1) 손실보조 대상

기금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조 대상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교역을 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이거나 동법 제17조에 의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협력사업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로 한다.

① 교역인 경우

- 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으로 인한 손실

-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으로 인한 손실
- 기타 교역으로 인하여 교역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손실 중 손실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경제협력사업인 경우

-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투자원본,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원금과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 배당금인 경우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2) 손실의 인정범위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인수하거나 제공받은 후 발생한 손실로 하고 현금 및 자금이체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지정한 구좌에 입금된 후 발생한 손실로 한다. 배당금 손실의 경우에는 주식 및 지분의 취득가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연도별 배당금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손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① 손실보조 제외대상

-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실
- 손실보조약정 효력발생(업무취급수수료 납부)이전에 발생한 손실
- 발생한 손실에 대해 다른 형태의 손실보전을 받은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

(3) 신청 및 약정절차

①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시행 전에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손실보조약정 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할 때 손실보조약정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첨 부 서 류》

- 사업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승인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 손실보조약정 신청액 산출명세표
- 신청인, 제작자,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 동 신청을 받은 통일원장관은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원장관의 지원방침에 의하여 손실보조 약정신청자(이하 “피약정자”)와 손실보조 약정을 체결한다.

③ 피약정자는 업무취급수수료(손실보조 약정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한 후 손실보조약정증서 1부를 교부받는다.

(4) 손실보조약정의 효력발생 및 해지

① 피약정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취급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했을 때 약정의 효력이 발생되며, 그 약정의 범위 내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② 피약정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이 취소·해지될 수 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 약정체결 당시에 손실을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알리지 아니한 때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법령 및 손실보조약정을 위반한 때

③ 교역이나 용역의 제공·송금 등 사업의 개시 자체가 피약정자의 귀책사유없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 한해 업무취급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5) 약정내용 변경절차

① 피약정자는 약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내용을 변경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손실보조약정 변경신청서 3부와 당해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약정변경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 피약정자는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약정변경을 승인하는 뜻이 기재·날

인된 손실보조약정 변경승인서 1부를 교부받는다. 다만, 약정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변경승인서 교부 전에 업무취급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6) 손실보조금 신청

피약정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동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손실보조신청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 부 서 류》

- 손실보조금 신청 경위
- 손실발생 증빙서류 사본
- 손실보조약정증서 사본
-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7) 보조금의 지급 범위

손실보조금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범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손실보조약정으로 정한 비율 이내로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은 전액을 보조받을 수 있다.

(8) 피약정자의 의무

피약정자가 손실보조약정 체결 후 준수하여야 할 약정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반출 및 송금 등 이행통지 : 물품의 반출·용역제공·자금의 송금 등이 이행되었을 때는 동 사실증명서류 사본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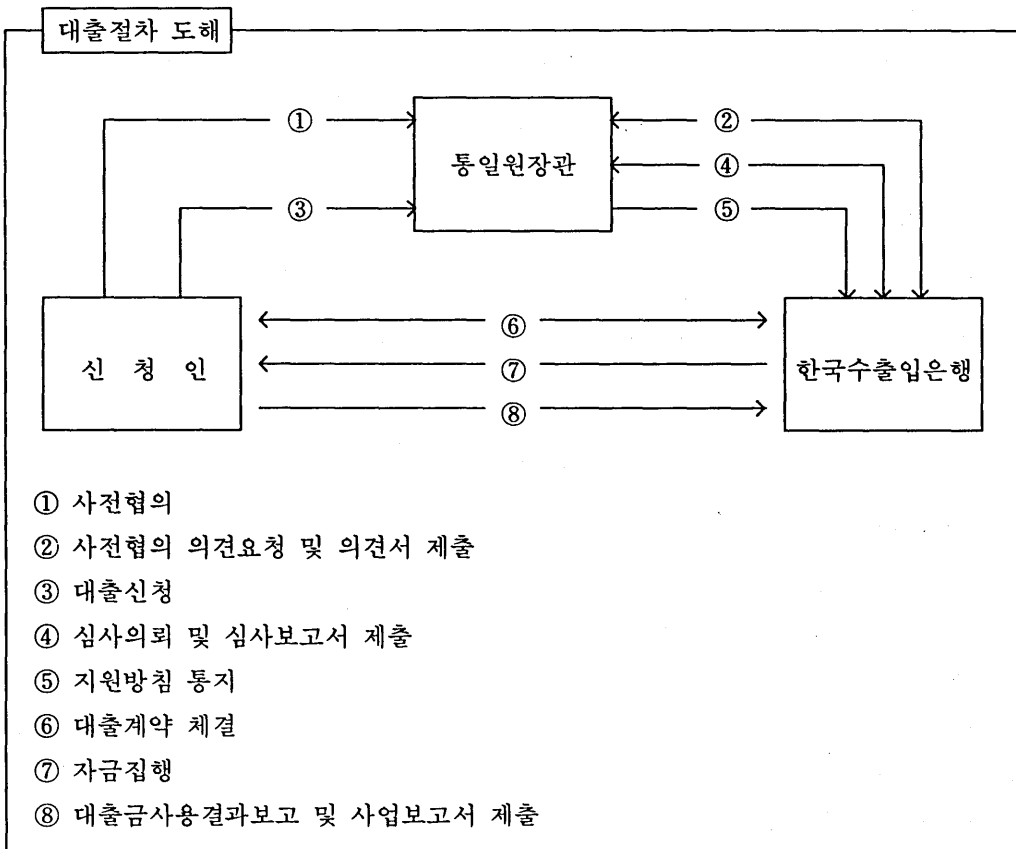
- ② 위험발생 통지 : 손실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알았을 때 또는 손실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수노력 : 손실보조금 지급을 청구한 피약정자는 이와 관련한 미회수금의 회수 및 권리행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회수금 납부 : 손실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회수금계산서 제출 및 회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 대위권행사 협조 : 기금수탁관리자가 손실보조금 지급에 따라 취득한 대위권을 행사할 시에는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⑥ 채권행사 보고 : 손실보조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매 6월마다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채권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손실보조금 반환 : 손실보조금 반환대상이 되어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통지받았을 때는 7영업일 이내에 반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⑧ 보고 및 조사협조 : 기금수탁관리자가 약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자금대출

(1) 자금대출 대상

① 기금에서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남한과 북한간에 교역을 하거나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②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거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2) 대출한도 및 조건

① 반출·반입인 경우,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소요자금의 100분의 90 이내이며, 대출조건은 반출·반입 유형별로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경제협력사업인 경우,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소요자금의 100분의 90 이내이며, 대출형식은 원화 또는 외화표시 증서대출로 하는데, 자금이 분할 집행되는 경우에는 최종집행시까지 어음대출로 할 수 있다. 이자율은 연 5%이며, 대출기간은 10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하고 원금은 연 1회 이상 정기분할 상환함을 원칙으로 하고 3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대출담보는 남한내 담보를 제공하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 등을 제공해야 하며 담보 이외에 연대보증인을 내세워야 할 경우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조의 약정도 가능하다.

(3) 대출절차

① 사전협의

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금대출 신청에 앞서 통일원장관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한 자금대출사전협의서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첨 부 서 류》

- 사업내용
- 사업추진 경위
- 대출신청 예상내용
- 추정수지명세서
- 차주, 제작자, 사업상대자의 개요
- 협의서 사본
-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 신청서 제출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자금대출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첨 부 서 류》

- 사업승인서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 대출신청 내용
- 이사회 기채결의서
- 차주, 제작자,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③ 통일원장관은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 등을 심사한 후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 신청인은 기금수탁관리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을 대출받는다.

(라) 대출받은 자의 의무

①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의 보고서를 기한 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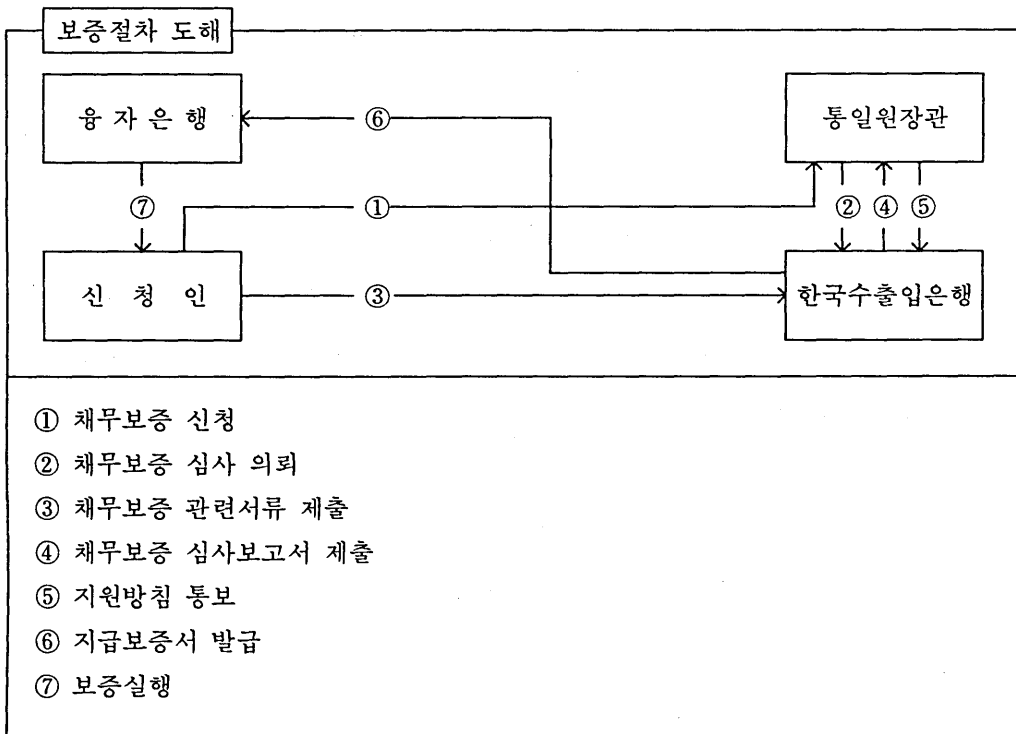
《보 고 서 류》

- 주식취득보고서 :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
-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
-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4월 이내
- 배당금 및 원리금 회수보고서(증빙서 첨부) : 회수일로부터 2월 이내
- 청산예정보고서 : 청산결정 후 1월 이내
- 청산보고서 및 부속 명세서 : 청산일로부터 2월 이내
-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 해당 사실 발생 후 2월 이내

② 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대출계약에 의해 약정된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북한으로부터 조기에 대금을 회수하는 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이 현금일 때는 2영업일 이내, 물품인 때에는 15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③ 대출받은 자는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관련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출자금 사용결과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채무보증



(1) 의뢰인과 수혜자

의뢰인은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이 되며 수혜자는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된다.

(2) 보증 대상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다.

(3) 보증 조건

- 보증형식은 증서에 의한다.
- 보증금액은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 내로 한다.
- 보증기간은 당해 거래의 용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할 경우도 있다.

(4) 보증 절차

의뢰인은 다음 서류를 첨부한 채무보증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고, 통일원장관은 보증의 타당성, 조건 등을 심사한 후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면 수혜자는 지급보증을 받게 된다.

《첨 부 서 류》

- 사업계획서 1부
- 이사회기채 결의서 1부
- 담보제공 계획서
- 차주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라. 금융기관 지원

① 금융기관은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융자시 발생하는 이자손실에 대해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 통일원장관의 지원방침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당해 손실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융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은 융자 취급액 범위 내에서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융자 자금지원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서 제출하여 통일원장관의 지원방침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1) 지원대상

민족의 신뢰·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에 의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

(2) 지원절차 및 조건

① 민족공동체회복지원으로는 손실보조, 자금대출, 채무보증, 금융기관지원 등이 있으며 지원절차는 전술한 각 지원 내용에 부합되는 절차를 준용되 필요할 경우 통일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은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 또는 남북교류협력추

진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지원형태

남한정부가 특정품목을 북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북한에 제안했을 때, 북한당국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경우에는 반출에 필요한 물품비용 및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경비 일체가 지원대상이다.

북한측의 교역당사자가 남한으로부터 물품구입을 희망하는 거래조건이 남한의 교역당사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남한정부가 민족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역이 실행된 경우, 이것도 지원대상이 된다. 이것은 남북간 청산결제제도가 시행될 경우 스윙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승인여부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좌우되며 민족공동체회복 지원차원의 교역은 동 물품이 꼭 필요한 북한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어, 남북교역 활성화 뿐만 아니라 여타부문의 남북교류협력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교역은 비교적 물량이 방대하거나, 거래규모가 상당하고 개별기업이 책임지는 차원의 교역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서, 북한주민의 복지에 관련되는 의식주를 비롯한 생필품의 공급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 지원유형간의 관계

① 손실보조는 북한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후적 손실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적 성격이 짙다.

② 교역관련 손실보조약정 신청에 있어 유의할 점은 지원의 기본적 요건으로 남북한 거래당사자간의 직접계약과 직접수송에 의한 직교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③ 자금대출 신청에 있어 유의할 점은 자금대출한도액은 소요자금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사업유형별로 결정되므로 대출신청 전에 자금대출에 관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대출대상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④ 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손실보조약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일부 기업이 기금 지원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실제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여부 심사를 엄격히 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을 사전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III.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추진현황과 전망

1. 추진현황

가. 경제인 교류

(1) 남북왕래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제정 이후 민간차원에서 최초로 1989년 이대경 목사의 북한방문이 이루어진 이래 1990년 범민족통일음악회 및 남북통일축구대회, 1991년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평가전 및 남북여성세미나 등 비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남북왕래가 이루어졌다.

1992년도에 들어와서는 남포 경공업단지 투자조사를 위한 우리기업인들의 방북, 김달현을 비롯한 북한 경제인사들의 국내 산업시찰을 위한 방한 등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남북왕래가 진행되었으나, 1993년도에는 UNDP 관련회의 등 국제회의 참가 목적의 남북왕래만 이루어졌다.

1994년도 남북관계는 북한 핵문제로 인해 전반적으로 경색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추진 합의(6.28), 김일성 사망(7.8), 미·북 제네바 합의(10.21),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11.8) 등 일련의 남북한 상환전개

에 따라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했던 한해였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주민통제강화의 필요성과 권력내부의 불확실성 등으로 공식적으로 남북교류를 전면 거부하면서도 국내 기업에 방북초청장을 발급하고, 선별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남북경제협력 관련분야에서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및 관련규정의 제정 등에 힘입어 작년 하반기에 접촉·방북신청이 대폭 증가하였고, 쌍용그룹 관계자 12명이 1994년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나진·선봉지역 투자환경조사차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제3국에서의 접촉단계에서 직접 왕래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2) 남북 경제인 접촉

1989년 이후 1994년말 현재 북한주민접촉 신청은 총 1,338건(2,864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북한은 그동안 당면한 경제난 타결 등을 목적으로 남북경협을 계속 희망해 왔으며, 국내 기업인의 대북진출의 욕과 맞물려 제3국에서의 남북경제인 접촉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94년도 신청건수는 478건(약 380개 기업)으로 '93년 263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는 바, 이는 정부의 11.8 「남북경협활성화조치」 발표로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가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업체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333건(71%), 대기업 137건(28%), 금융기관 등 기타 8건(1%)의 순으로 되어 있고, 목적별로는 물자교역 280건(58%), 투자목적 198건(42%)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부터는 투자목적의 접촉신청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그동안 남북경제인 접촉은 193회(62건) 이루어졌으며, 장소별로 보면 북

경·심양 등 중국지역이 154회로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일본 15회, 홍콩 12회, 기타 12회로 나타나고 있어 1992년 이후 계속해서 중국이 남북경제인들 간의 주요 상담지역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물자교역

(1) 개 황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본격적인 남북교역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교역은 승인기준으로 1990년 이전의 2천만불대에서 1991년 이후는 2억불 내외의 수준으로 증가, 1994년에는 2억 2천만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통관실적으로는 1990년 이전의 1천만불대에서 1991년에는 1억 1천만불, 1992년 이후에는 2억불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남북교역이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선언과 조치로 진행되어 왔고 이에 상응하는 북한측의 공식적인 조치가 아직까지 없다는 점과, 1993년 기준으로 약 26억 4천만불 내외로 평가되는 북한의 대외무역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남북교역 규모는 결코 적지 않다고 하겠다.

1994년에는 위탁가공교역의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섬유류가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철강금속류의 비중이 감소하는 등 교역구조면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교역이 간접교역 형태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는 지난해와 다름이 없다.

정부는 1994년 10월 21일 미·북간 제네바 합의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에 따라 1994년 11월 8일 통일관계장관회의 결정으로 「기업

인 방북», 「위탁가공교역활성화», 「시범경협 우선허용」 등 남북경제협력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로 위탁가공을 위한 기술자의 방북과 설비반출이 허용됨으로써, 대북위탁가공교역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교역현황 및 분석

① 교역규모

1988년 10월 이후 1994년말 현재 남북교역 승인실적은 반입 802,356천불, 반출 79,479천불, 합계 881,835천불이며, 통관실적은 반입 653,982천불, 반출 44,039천불, 합계 698,021천불로, 승인과 통관 모두 반입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남북교역이 반입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989년 이후 남북교역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이나 1993년에는 북한 핵문제로 1992년에 비해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4년에는 11.8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에 힘입어 승인기준으로는 228,944천불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였으며, 통관기준으로는 194,546천불로 전년대비 4.3% 증가하였다.

연도별 반입·반출 승인 및 통관 현황

(건/천\$)

연도	승 인			통 관		
	반 입	반 출	계	반 입	반 출	계
'88	4/ 1,037	—	4/ 1,037	—	—	—
'89	57/ 22,235	1/ 69	58/ 22,304	66/ 18,655	1/ 69	67/ 18,724
'90	75/ 20,354	4/ 4,731	79/ 25,085	78/ 12,278	6/ 1,187	84/ 13,465
'91	328/ 165,996	40/ 26,176	368/ 192,172	300/ 105,722	23/ 5,547	323/ 111,269
'92	365/ 200,685	42/ 12,818	407/ 213,503	510/ 162,863	63/ 10,563	573/ 173,426
'93	478/ 188,528	76/ 10,262	554/ 198,790	601/ 178,166	97/ 8,425	698/ 186,591
'94	601/ 203,521	173/ 25,423	774/ 228,944	708/ 176,298	267/ 18,248	975/ 194,546
계	1,908/ 802,356	336/ 79,479	2,244/ 881,835	2,263/ 653,982	455/ 44,039	2,718/ 698,021

② 교역 승인기관

남북간 물자교역 승인기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교역대상

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통일원고시 제94-5호)에 따라, 반출·반입 제한 승인 품목은 통일원장관이 승인기관이며, 반출·반입 자동승인 품목은 통일원장관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승인권한을 위탁하였다.

1988년부터 1994년말 현재 전체 반입·반출 승인실적 중 제한승인 품목이 142,409천불로 16.1%, 자동승인 품목이 739,426천불로 83.9%를 점유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남북교역이 자동승인품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기관별 반입 승인 현황

(단위 : 천\$, ()안은 총액대비 비율)

연 도	제한승인(통일원)		자동승인(은행)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88	1	233 (22.5)	3	804 (77.5)	4	1,037 (100)
'89	6	3,235 (14.5)	51	19,000 (85.5)	57	22,235 (100)
'90	20	7,694 (37.8)	55	12,660 (62.2)	75	20,354 (100)
'91	112	51,348 (30.9)	216	114,648 (69.1)	328	165,996 (100)
'92	55	23,398 (11.7)	310	177,287 (88.3)	365	200,685 (100)

연 도	제한승인(통일원)		자동승인(은행)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93	43	9,804 (5.2)	435	178,724 (94.8)	478	188,528 (100)
'94	34	19,969 (9.8)	567	183,552 (90.2)	601	203,521 (100)
계	271	115,681 (15.5)	1,637	686,675 (84.5)	1,908	803,356 (100)

기관별 반출 승인 현황

(단위 : 천\$, ()안은 총액대비 비율)

연 도	제한승인(통일원)		자동승인(은행)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89	—	—	1	69	1	69
'90	—	—	4	4,731	4	4,731
'91	7	15,771 (60.2)	33	10,405 (39.8)	40	26,176 (100)
'92	6	1,541 (12.0)	36	11,277 (88.0)	42	12,818 (100)
'93	15	1,723 (16.8)	61	8,539 (83.2)	76	10,262 (100)

연 도	제한승인(통일원)		자동승인(은행)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94	5	7,693 (30.3)	168	17,730 (69.7)	173	25,423 (100)
계	33	26,728 (33.6)	303	52,751 (66.4)	336	79,479 (100)

③ 교역품목

가) 승인기준

1994년 들어 품목별 반입승인 실적은 금괴·아연괴 등 철강·금속류의 비율이 전년의 80.3%에서 64%로 낮아졌으며, 섬유류의 비율이 5.9%에서 11.3%로 늘어난 외에 광산물, 농산물 등의 비율은 각각 0.6%, 8.5%에서 2.2%, 17%로 다소 증가하였다.

철강·금속류의 비중 감소는 금·은·아연괴와 빌레트 등 주요품목들이 비교적 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며, 농산물과 섬유류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은 1994년 들어 낙화생, 사과 등 농산물의 대량반입 및 섬유류 위탁가공교역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1994년의 품목별 반출승인 실적은 섬유류의 비율이 전년의 70.4%에서 54.3%로 감소하였는 바, 이는 미·북 제네바 합의에 따른 중유의 반출로 화학제품의 비율이 전년의 9.1%에서 23%로 대폭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섬유류의 비율은 위탁가공교역의 증대에 따른 원·부자재 반출의 증가에

따라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의 품목 중 1994년 들어 철강재의 반출비율이 다소 증가한 반면, 농수산물, 전자제품, 기계류의 반출비율이 감소하였다.

반입승인 품목구조

(단위 : 천\$, ()안 총액대비 비율)

연 도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	철강·금속	섬유류	화학제품	기 타	계
'89~'90	7,353 (17.3)	2,437 (5.7)	6,853 (16.1)	22,570 (53.0)	1,728 (4.0)	89 (0.2)	1,559 (3.7)	42,589 (100)
'91	17,426 (10.4)	25,821 (15.6)	23,231 (14.0)	91,720 (55.3)	2,870 (1.7)	3,141 (1.9)	1,787 (1.1)	165,996 (100)
'92	24,485 (12.2)	13,685 (6.8)	31,916 (15.9)	123,395 (61.5)	3,878 (1.9)	1,630 (0.8)	1,696 (0.9)	200,685 (100)
'93	16,060 (8.5)	4,163 (2.2)	1,084 (0.6)	151,361 (80.3)	11,182 (5.9)	617 (0.3)	4,106 (2.2)	188,528 (100)
'94	34,645 (17.0)	4,200 (2.1)	4,522 (2.2)	130,351 (64.0)	22,918 (11.3)	952 (0.5)	5,933 (2.9)	203,521 (100)

반출승인 품목구조

(단위 : 천\$, ()안 총액대비 비율)

연 도	농산물	섬유류	전기· 전자제품	기계류	화학제품	철 강· 금 속	기 타	계
'89~'90	-	2,519 (52.5)	-	2,188 (45.6)	83 (1.7)	-	10 (0.2)	4,800 (100)

연 도	농산물	섬유류	전기· 전자제품	기계류	화학제품	철 강· 금 속	기 타	계
'91	1,750 (6.6)	7,196 (27.5)	1,560 (6.0)	--	13,530 (51.7)	--	2,140 (8.2)	26,176 (100)
'92	410 (3.2)	467 (3.6)	--	23 (0.2)	9,493 (74.1)	2,102 (16.4)	323 (2.5)	12,818 (100)
'93	491 (4.8)	7,217 (70.4)	500 (4.9)	179 (1.7)	936 (9.1)	39 (0.4)	900 (8.7)	10,262 (100)
'94	50 (0.2)	13,794 (54.3)	1 (0)	79 (0.3)	5,957 (23.4)	151 (0.6)	5,391 (21.2)	25,423 (100)

주요 반입승인 품목

(단위 : 천 \$)

'89~'91		'92		'93		'94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아 연 피	59,179	아 연 피	63,371	금 피	75,458	금 피	65,570
금 피	17,649	금 피	35,328	아 연 피	51,968	아 연 피	40,816
시 멘 트	15,480	시 멘 트	31,431	빌 레 트	12,062	은 피	5,586
빌 레 트	14,648	빌 레 트	13,383	호 도	8,301	호 도	9,992
열 연 코 일	13,750	한 약 재	8,103	은 피	8,280	사 과	7,320
무 연 탄	13,719	호 도	5,579	냉 동 조 기	3,050	빌 레 트	7,725
냉 동 명 태	9,472	냉 동 명 태	5,072	한 약 재	2,879	남 자 자 켓	6,530

'89~'91		'92		'93		'94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한 약 재	7,743	열 연 코 일	3,871	주 류	2,784	열 연 코 일	4,838
냉 동 조 기	6,380	건 고 사 리	3,586	남 자 자 켓	2,537	남 자 바 지	4,660
감 자	5,679	은 피	4,378	면 타 율	2,175	한 약 재	4,430
냉 동 홍 어	4,720	냉 동 조 기	2,384	건 고 사 리	1,718	면 타 율	4,367
생 사	3,716	진 고 추	2,000	남 자 바 지	1,686	알 루 미 늄	3,232
호 도	2,507	연 피	1,689	남 자 셔 츠	1,525	낙 화 생	3,750
냉 동 오 징 어	2,435	냉 동 골 뱅 이 살	1,590	열 연 코 일	1,267	고 사 리	2,383
건 오 징 어	2,435	남 성 용 자 켓	1,387	철 근	1,173	시 멘 트	2,820
땅 콩	2,205	선 철	1,375	기 타	11,665	초 제 방 석	2,139
V A M	2,011	냉 동 골 뱅 이	1,300			로 알 제 리	1,950
건 고 추	1,930	버 섯 류	1,244			남 자 셔 츠	1,867
전 기 동	1,890	PVC 수 지	1,095			고 구 마 즐 기	1,608
냉 동 송 이	1,722	잎 담 배	1,049			선 철	1,536
연 피	1,489	기 타	11,470			냉 동 명 태	1,534
은 피	1,236					무 연 탄	1,356
봉 강	1,276					주 류	1,346
기 타	15,315					여 자 자 켓	1,146
						기 타	15,020
계	208,585	계	200,685	계	188,528	계	203,521

주요 반출승인 품목

(단위 : 천\$)

'89~'91		'92		'93		'94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HDPE	6,396	LDPE	7,453	테 트 론 솜	3,314	병 커 C 유	4,515
나일론직물	5,963	냉 연 강 관	2,102	면 직 물	1,783	면혼방직물	3,937
테 트 론 솜	2,450	HDPE	837	메 탄 울	842	설 탕	3,590
양 말	2,188	마 늘	350	면혼방직물	729	면 직 물	3,281
백 설 탕	2,078	P.P 수 지	290	칼 라 TV	500	양 모 직물	1,570
쌀	1,750	폴리에스터섬유	241	설 탕	363	천 연 고 무	976
플라스틱가소제	1,426	백 판 지	200	폴리에스터직물	264	아크릴사원부자재	752
칼 라 TV	1,340	담배포장용필름	184	알미늄은박지	245	필라멘트사직물	751
비닐박막	1,283	라 면	159	공 기 림	230	의류부속품	599
직 물 류	1,180	담 배 필 터	155	비 누	182	가 구 류	460
폴리에틸렌필름	1,033	담배갑종이	131	재 봉 틀	179	톨 루 엔	420
LDPE	926	폴리에틸렌수지	130	냉 동 콩 치	150	단 추	374
고유황디젤유	845	자켓원부자재	96	골 텐 직 물	125	폐 놀	363
세 탁 비 누	760	배낭원부자재	85	부직포직물	113	편 물	351
담 배 필 터	316	세 탁 비 누	58	냉동오징어	105	지 퍼	345
냉 장 고	220	기 타	347	지 퍼	101	LDPE	341
PS 수 지	138			기 타	1,037	테 트 론 솜	355
담 배 필 터	83					부직포직물	313

'89~'91		'92		'93		'94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담 배 종 이	80					벤 젠	295
잠 바	69					스 웨 터	178
종 이	62					재 봉 사	175
고무가황촉진제	56					비 누	175
기 타	334					평 판 압 연	151
						자 수 직 물	150
						레 이 블	125
						도포직물원부자재	116
						면 사	114
						신발부분품	107
						오 리 털	104
						기 타	460
계	30,976	계	12,818	계	10,262	계	25,423

나) 통관기준

1994년 들어 품목별 반입통관 실적은 철강·금속류의 비율이 전년의 86.6%에서 77.3%로 감소한 반면, 섬유류, 농산물, 수산물, 화학제품이 각각 5.0%, 5.4%, 0.5%, 0.4%에서 10.5%, 6.8%, 1.6%, 0.6%로 증가하였으며, 광산물은 지난해의 0.8%와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품목별 반출통관 실적은 섬유류가 전년의 74.5%에서 70.5%로 감소하였

고, 화학제품은 13%에서 7.4%로 감소한 반면, 농수산물이 0.1%에서 0.8%로 증가하였다.

품목별 반입·반출통관 실적은 비율면에서 승인실적과 대체로 부합되고 있으며, 승인대비 통관비율은 1993년 93%에서 1994년은 8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입통관 품목구조

(단위 : 천\$, ()안은 총액대비 비율)

연 도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	철강·금속	섬유류	화학제품	기 타	계
'89~'90	5,345 (17.3)	566 (1.8)	2,693 (8.7)	19,602 (63.4)	1,515 (4.9)	-	1,212 (3.9)	30,933 (100)
'91	5,046 (4.8)	3,053 (2.9)	6,173 (5.8)	86,046 (81.4)	1,588 (1.5)	1,672 (1.6)	2,144 (2.0)	105,722 (100)
'92	10,576 (6.5)	5,085 (3.1)	14,438 (8.8)	125,416 (77.0)	3,683 (2.3)	1,248 (0.8)	2,417 (1.5)	162,863 (100)
'93	9,674 (5.4)	878 (0.5)	1,371 (0.8)	154,263 (86.6)	8,945 (5.0)	663 (0.4)	2,372 (1.3)	178,166 (100)
'94	12,061 (6.8)	2,723 (1.6)	1,448 (0.8)	136,340 (77.3)	18,500 (10.5)	954 (0.6)	4,272 (2.4)	176,298 (100)

반출통관 품목구조

(단위 : 천\$, ()안 총액대비 비율)

연 도	농산물	섬유류	전기· 전자제품	기계류	화학제품	철 강· 금 속	기 타	계
'89~'90	-	69 (5.5)	-	1,094 (87.1)	83 (6.6)	-	10 (0.8)	1,256 (100)
'91	1,607 (28.9)	25 (0.5)	447 (8.1)	-	3,468 (62.5)	-	-	5,547 (100)
'92	64 (0.6)	496 (4.7)	-	22 (0.2)	7,932 (75.1)	1,957 (18.5)	92 (0.9)	10,563 (100)
'93	6 (0.1)	6,274 (74.5)	463 (5.5)	-	1,096 (13.0)	34 (0.5)	552 (6.6)	8,425 (100)
'94	151 (0.8)	12,856 (70.5)	1 (-)	38 (0.2)	1,349 (7.4)	243 (1.3)	3,610 (19.8)	18,248 (100)

주요 반입통관 품목

(단위 : 천\$)

'89~'91		'92		'93		'94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아 연 괴	55,774	아 연 괴	59,309	금 괴	78,657	금 괴	67,658
금 괴	17,537	금 괴	37,193	아 연 괴	52,780	아 연 괴	43,329
열 연 코 일	14,836	빌 레 트	16,849	빌 레 트	12,688	빌 레 트	10,748
빌 레 트	7,608	시 멘 트	11,618	은 괴	8,096	남 자 자 켓	7,491

'89~'91		'92		'93		'94	
품 목	금액	품 목	금액	품 목	금액	품 목	금액
시 멘 트	4,935	한 약 재	4,563	호 도	3,627	호 도	6,347
감 자	4,195	은 피	3,872	남 자 자 켓	2,242	열 연 코 일	5,124
무 연 탄	3,829	열 연 코 일	3,654	한 약 재	2,009	은 피	5,613
한 약 재	3,667	냉 동 명 태	2,826	면 타 월	1,654	남 자 바 지	3,966
생 사	3,103	무 연 탄	2,514	건 고 사 리	1,653	남 자 셔 츠	2,397
전 기 동	2,447	선 철	2,164	남 자 바 지	1,561	면 타 월	2,209
냉 동 명 태	1,718	감 자	1,882	열 연 코 일	1,348	한 약 재	2,145
연 피	1,466	호 도	1,780	주 류	1,193	주 류	1,691
은 피	1,204	연 피	1,756	기 타	10,658	선 철	1,564
기 타	14,336	남 자 자 켓	1,616			자 동 차 시 트 카 바	1,105
		냉 장 명 태	1,393			로 알 제 리	1,104
		염 화 비 닐 수 지	1,099			무 연 탄	1,009
		기 타	8,775			기 타	12,798
계	136,655	계	162,863	계	178,166	계	176,298

주요 반출통관 품목

(단위 : 천\$)

'89~'91		'92		'93		'94	
품 목	금액	품 목	금액	품 목	금액	품 목	금액
쌀	1,607	LDPE	5,132	테 트 론 솜	3,184	직 물 류	7,071
고유황디젤유	1,392	냉 연 강 판	1,957	직 물 류	1,483	의 류 부 속 품	3,926

'89~'91		'92		'93		'94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플라스틱가소제	1,137	폴리에틸렌필름	1,226	의류부속품	1,392	천 연 고 무	1,012
양 말	1,094	폴리에틸렌수지	837	메 탄 을	873	설 탕	1,989
칼 라 TV	427	직 물	260	칼 라 TV	463	폴리에스터섬유	614
폴리에틸렌필름	250	담 배 필 터	242	LDPE	313	아크릴원부자재	571
LDPE	216	플라스틱가소제	183	알미늄은박지	225	벤 젠	524
PS 수 지	161	폴리프로필렌수지	130	세 탁 비 누	124	LDPE	341
HDPE	146	종이(한지)	128	설 탕	63	폐 늘	334
담 배 필 터	83	자켓원부자재	96	오 리 털	49	압 연 강 판	243
잠 바	69	신 발 갑 피	80	지 퍼	44	스웨터원부자재	199
고무가황촉진제	56	폴리에스터직물	42	아 크 릴 사	38	비 누	175
아크릴수지	44	남성용정장	37	남 자 정 장	37	단 추	168
담 배 종 이	40	여성의류(7종)	30	스테인레스강	34	틀 루 엔	130
냉 장 고	20	남성의류(8종)	28	레 이 블	25	기 타	951
폴리에스터직물	18	고무가황촉진제	27	기 타	168		
폴리프로필렌수지	10	포 장 기	22				
설 탕	10	LDPE(포장용)	20				
기 타	23	기 타	86				
계	6,812	계	10,563	계	8,425	계	18,248

④ 교역 업체 및 형태

1988년 10월 7일 대북경제개방조치 이후 남북교역은 조직과 정보, 자금능력에서 앞서있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1990년부터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말 현재 총 409개 업체가 남북교역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창기의 남북교역은 해외 중개상을 사이에 둔 순수한 간접교역 형태였으나, 차츰 우리 기업들의 경험축적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지사에서 북한측 상대방과 직접 교역협의를 하되 계약 및 대금결제는 해외 중개상을 통하는 방식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 중개상은 홍콩의 중개상들이 남북교역 중개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중국·싱가폴 중개상들도 꾸준한 역할을 보이고 있다.

1991년 이후에는 북한측과 직교역을 추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1994년에는 해외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 방식의 위탁가공교역이 1993년에 비해 대폭 증대되었다.

물품운송은 북한항에서의 선적기일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1회 거래량이 1선북 이상인 경우에는 제3국적선을 이용한 남북간 직수송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가) 직교역 추진

1988년 10월 7일 이후 1994년말 현재 반출입 승인총액 881,835천불 중 직교역은 50건 36,543천불로 전체 남북교역 실적의 4.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남북한의 첫 직교역은 남한의 천지무역과 북한의 금강산국제개발회사간에 이루어졌는 바, 우리 쌀 5천톤을 반출하고 북한 무연탄 3만톤과 시멘트 1만 1천톤을 상환받는 구상교역으로 1991년 4월 10일 정부의 승인을 얻어

1991년 8월 쌀 5천톤이 북한 나진항에 양하되었으나, 북한측으로부터 대응 물자의 상황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 후 무연탄과 한약재 등 일부 농산물의 직교역이 이루어졌으나, 현실적인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남북간의 직교역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따라 정부의 직교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농산물 중에서 한약재가 국내생산이 부족하고 북한산 한약재의 성분이 국내산과 비슷하여 상호보완성이 있어 동 품목을 직교역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2년 3,287천불, 1993년 1,442천불의 한약재가 직교역으로 반입 통관 되었으며, 1994년에는 창출 등 9개 품목 1,665톤에 대한 직교역 반입이 추진되었다.

이외에도 북한의 토상흑연·로얄제리의 반입과 연계교역으로 설탕·비누 등 생활용품의 직교역 반출이 이루어졌다.

현재 남북간에는 당국차원의 직교역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이러한 직교역 실적은 어려운 현실여건하에서 직교역 체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의 결실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연도별 직교역 승인실적

연 도	건 수	금 액 (천\$)			비 고
		반 출	반 입	계	
'91	3	5,808	8,550	14,358	쌀, 무연탄
'92	11	385	7,987	8,372	한약재, 농산물
'93	14	—	3,447	3,447	한약재
'94	22	3,388	6,978	10,366	로얄제리 등
계	50	9,581	26,962	36,543	

나) 위탁가공교역 추진

위탁가공교역은 우리 원·부자재를 북한에 반출하여 가공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하는 교역방식으로, 1991년 12월 코오롱상사가 학생가방을 간접교역방식으로 처음 성사시킨 이후, 1992년 19건 556천불, 1993년 44건 3,611천불, 1994년 109건 16,598천불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방·배낭·완구·운동화갑피·슈트카바 등이 일부 반입되고 있는 바, 가공되어 반입되는 물품들의 봉제상태 등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순 반출입의 증가율보다 위탁가공교역이 큰 폭으로 증대되고 있는 바, 이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이용과 봉제술도 좋은 뿐 아니라 위탁가공교역 추진과정을 향후 남북경협외의 사전준비과정으로 보아 국내기업들이 적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측으로서도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투자부담없이 외화획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낙후된 경공업분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위탁가공교역은 모두 해외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통신 및 수송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를 위한 기술자의 방북과 생산설비의 반출 등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제품의 위탁가공교역에 있어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연도별 위탁가공교역 승인실적

연 도	건 수	금 액 (천\$)			비 고
		반 출	반 입	계	
'91	10	13	23	36	가방
'92	10	413	556	979	가방, 의류, 신발
'93	44	3,611	4,385	7,996	의류, 완구
'94	109	11,966	16,598	28,564	의류, 신발
계	158	16,003	21,562	37,575	

다. 경제협력사업

남북경제협력은 남북상호간의 신뢰와 이해를 높이고 상호보완적 경제여건을 활용하여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며, 장기적으로는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아직까지 한 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에 투입되는 실질적 경험의 착수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남북경제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준비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주요사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1989년 1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일행 및 1991년 12월 통일교 문선명 교주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고 금강산 관광지개발 등 합작사업 추진에 합의한 바 있으나 구체적 결실을 맺지 못하였으며,

1992년 1월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일행 방북시에는 셔츠·블라우스·자켓·가방 등 9개 품목에 대해 남포경공업 단지를 활용, 합영방식으로 경협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고, 같은 해 9월에는 고합그룹의 장치혁 회장 일행에 화학섬유분야 경협 논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특히, (주)대우의 남포공단 조성 참여와 관련해서는 1992년 10월 16일부터 9일까지 민·관 합동 투자실무조사단이 현지답사까지 실시하였으나, 핵문제로 인해 더 이상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인 접촉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업내용은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에서부터 기계, 전자, 유통, 중화학공업, 인프라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아직까지는 상호 의사 타진 및 탐색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정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핵개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보장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교통로의 개설과 통신망의 연결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1992년 9월 17일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으나, 북한 핵문제의 미해결로 경제협력의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에서의 소규모 투자, 제3국 건설현장에서의 북한 노동력 고용 등 시범적 사업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남북경제공동위를 통해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투자여

건 조성에 주력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의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 모색

정부는 통일정책구도속에 「화해·협력단계」를 설정하여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민주적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라는 통일정책 3대 기조를 통해 남과 북이 함께 자유와 풍요를 누리며 공동번영할 것을 표방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갑자기 NPT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한 핵문제가 남북관계 전반을 경색국면으로 전환시켰으며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도 침체되었다. 정부는 1993년 6월 22일 제11차 통일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경협을 핵문제 해결시까지 유보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이같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서도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접촉과 남북교역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였다.

가. 「신경제 5개년 계획」 남북경제교류협력 부문계획 수립

정부는 1993년 7월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중기계획으로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남북경제교류협력 부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이것을 실천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계획으로서 향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계획은 기존의 제7차 5개년 남북교류협력 부문계획 중 경제분야 계획을 남북한간 타결된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내용 등 남북관계 진전 상황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보완한 것으로서 계획기간 중 남북한간 「화해·협력단계」 정착과 「남북연합단계」 진입에 대비하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 ① 남북한간 물자교류
- ②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
- ③ 과학기술 환경분야 교류협력
- ④ 남북한간 교통통신망 연결
- ⑤ 경제관련 통계·자료의 교환
- ⑥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
- ⑦ 남북경제교류협력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
- ⑧ 남북경협 및 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자원조달
- ⑨ 남북경제연구의 체계적 추진 등 9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과제들은 「시범사업실시 및 제도화 단계」,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 단계」, 「경제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한 경협본격화 단계」라는 3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나. 남북경제교류협력 활성화 조치

(1) 배 경

1994년 10월 21일 미·북한 제네바 협상의 타결로 북한 핵문제해결의 제1단계인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전시켜 나아갈 시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반적인 한반도 상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진전시켜 나아가고 김영삼 대통령이 밝힌 “민족발전 공동계획”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이번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의 배경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미·북한 제네바 협상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데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조치는 새삼스럽게 취해진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핵문제를 남북경협에 연계시켜온 일관된 입장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이루어졌던 결정사항에 근거하여 변화된 상황에 맞게 이를 완화한 것으로, 이를 새로운 대북제의로 보거나 정부입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 조치는 미·북한 제네바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는 전제하에서 추진된 것으로, 앞으로 미·북한 제네바 합의의 이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남북경협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우리 정부의 미래지향적 노력에 따른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와 복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가 장벽없는 하나의 공동시장을 지향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남북한도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에 합류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 전체의 복리증진을 남북관계의 중심으로 삼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증진의 길을 넓혀 나가기 위해 남북한이 하루 속히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북한은 구태의연하고 소모적인 상호 비방이나 긴장 고조정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만 한다.

이번 조치가 이처럼 창조적이고 실질적인 남북관계라는 미래 지향적 인식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주변정세의 역동적인 변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조화시키려는 진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할 것이다.

(2) 조치내용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11월 7일 경제인들이 마련한 대통령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참석과 필리핀·인도네시아·호주 등 3개국 순방 환송 만찬연설을 통해 “앞으로 남북관계는 창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접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이 상부상조의 정신 아래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경제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허용 등 남북경제 협력사업을 활

성화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1994년 11월 8일 제17차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북 핵협상 타결로 이후 이루어진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고 민족공동 발전의 길을 넓혀 나가기 위한 초보단계의 남북경협을 활성화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이날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발표한 경제협력을 위한 당면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인의 방북 등 남북경제인사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북한과의 시범사업 협의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우리 기업인의 북한 방문 및 대북 투자환경 조사를 위한 민간차원의 조사단 파견과 함께 투자설명회, 우리의 산업현장 견학 등에 북한 경제인을 초청하는 사업을 허용해 나아갈 것이다.

둘째, 현재 진행중인 위탁가공교역을 활성화해 나아가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 현지에서의 생산설비 운용,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자 방북과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시설재 반출을 허용해 나아갈 것이다.

셋째, 시범적 경제협력 사업을 허용하여 북한 주민의 생활향상과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소규모의 시범적 경제협력 사업과 함께 경험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내기업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허용해 나아간다.

이와 함께 제3국에서의 건설 및 자원개발 현장에 북한 노동 인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고, 제3국 합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한 투자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사업 참여 등을 허용해 나아간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따라 남북당국간 협의를 거쳐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등 경제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당면 조치사항으로 발표하면서, 이러한 조치로 남북경협에 대한 과잉기대를 갖거나 서두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 조치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소집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이어서 정부는 1994년 11월 24일 “제2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들을 심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이 남북교류협력을 규정한 제반 국내법절차에 따라 신중하고 질서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관련 규정과 구체적 대책방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날 “제2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심의된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 구비서류들을 명시하고,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시에는 북한측과의 의향서, 협력사업 승인신청시에는 북한측과의 협의서와 북한 당국의 확인서를 신청서류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 남북경협 대상에 합영·합작투자,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 상대방 주민 고용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 경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시방북이 필요한 경우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수시 방북이 허용된 기간중에는 신고로 방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협력사업의 승인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50일에서 30일로 단축했으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2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내기업과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 국내기업과 경제단체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조사, 연락, 연구활동 등을 위한 북한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구비서류·승인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 기업과 은행 등 경제기관이 북한지역에 설치하는 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일원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사무소 설치 지역은 북한 전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사무소 주재원이 업무추진을 위해 수시 방북이 필요한 경우 1년 6개월 범위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수시 방북이 허용된 기간 중에는 신고로 방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 대북한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생산설비 반출절차로서 무상반출, 100만불(연간 누계 300만불)이상 대규모 설비반출 등은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하도록 하고, 소규모 설비는 외국환 은행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북승인, 경제협력승인 과정에서 기업인들에게 “대북투자계약서 모델”, “경협협약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기업들의 신중한 대북진출을 지원해 나아가는 한편, 남북경협의 질서있는 추진을 위해 민간의 자율조정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정비·간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이중성과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북경협을 신중하고 차분하게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현재 정부가 시범적으로 기업인 방북과 소규모 경협을 허용하지만 본격적인 남북경협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합의를 통한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심의된 규정들을 바탕으로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질서있고 신중하게 추진되어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발전공동계획” 구상의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3. 남북경제교류의 전망과 과제

가. 전 망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태도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김정일 체제와 대남혁명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서, 북한의 현체제와 노선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태도의 본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도 동서간의 화해추구와 공산권의 변화 등 세계사의 흐름을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며, 우리가 제기한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통한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에도 호응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요인들이 점차 증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구등지에서의 유학을 통해 다양한 국제조류를 경험한 신세대의 성장, 경제사정의 악화와 이로 인한 남북한 국력 격차의 확대,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권력변동 등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1990년대에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으면서 남북경제교류협력이 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남북 모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남북한간 교역규모는 북한의 외환사정과 교역상품 구조로 볼 때, 당분간 획기적인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이에 따른 설비와 생산품의 이동으로 교역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협력사업은 북한이 여전히 대내에 파급될 역효과를 우려하면서 외화 획득에 주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한된 지역에서의 직물, 신발 등

수출 가능한 업종의 합작투자자와 관광분야 교류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에는 북한이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에 제출한 합작투자 유치 희망목록이 참고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보면 대부분 신흥공업국의 수출경쟁력이 높은 경공업, 화학공업 분야의 소규모 투자 중심으로 선정되어 있다.

북한은 우리와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북한사회와 차단하기 위해 나진-선봉, 남포, 신의주, 원산 등 일부지역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의 지역을 공동개발하는 방식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두만강개발계획은 약 3백억불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원조달과 관계국간 이해조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남북경제교류 차원보다는 다자간 협력차원에서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과 제

앞으로 남북경제교류를 본격화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남북한 당국이 해결해 나가야 할 일, 실제로 교류를 실시해 나갈 기업이 하여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먼저 남과 북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남북경제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간에 부속합의서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위원회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분쟁해결 등 세부적

인 사항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경제교류를 위해서는 북한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먼저 북한은 당면문제만 해결하려는 대남 접근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 정부와 직접 경제교류 문제를 풀어나가는 적극적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핵문제에 있어서도 남북 상호사찰을 수용함으로써 세계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의혹을 씻어야 하며, 이산가족 등 남북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은 시급한 산업하부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현재 북한의 산업하부구조로는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수산업과 비효율적 건설사업에 편중된 투자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은 교역과 경제협력사업에 관한 법과 제도를 경제원리에 맞게 정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앙에 집중된 의사결정 체제를 각 경제단위로 분산시키는 관리체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정부는 남북간의 경제교류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데 맞춰 우리 내부의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남북경제교류가 본격화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두어야 한다.

또한 남북경제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 손실보조, 청산결제 제도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는 문제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단순히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한

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제원리에 입각한 기업활동에 익숙치 못한 북한으로서는 우리 기업간의 선의의 경쟁을 악용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기업간 사전조정을 통한 질서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정 1990. 9.25 통일원고시 제90-2호
개정 1991. 5. 6 통일원고시 제91-2호
개정 1994.12. 1 통일원고시 제94-4호
개정 1995. 1. 3 통일원고시 제95-1호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을 공고하고 남북한 교역물품의 반출·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품목분류) 이 고시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

제 3 조(반출·입 제한승인품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은 반출·입 제한승인품목으로 본다.

1. 대외무역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통합공고에서 수출·입에 제한이 있는 품목
2. 반출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탁가공용 기계·장치·설비가.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교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연계교역으로서, 대응물품이 반입 제한승인품목인 경우

나. 1회 미화 100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미화 300만달러 이상의 반출
다. 설비 반출대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생산물품이나 가공비 등으로 상
계하는 경우

3. 반입물품으로서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4. 반입물품으로서 별표1에 계기한 품목

5. 무상으로 반출·입하는 품목

제 4 조(반출·입 자동승인품목)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 제한승인품목
이외의 품목은 반출·입 자동승인품목으로 본다.

제 5 조(반출·입의 승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 제한승인품목의
반출·입은 통일원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이를 승인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 자동승인품목의 반출·입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승인권한을 위탁
한다.

제 6 조(반출·입 승인실적의 보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을
승인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승인서상에 “남북한교역대상물품”임을 표시하
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승인결과를 3일이내에 통일원장관 및 통상산업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기타 반출·입 승인절차) 반출·입 승인절차에 관하여 법·동법시행령
및 이 고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
정을 준용한다.

부 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 시행이전에 자동승인품목으로 승인된 반출·입은 이 고시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반입 제한승인 품목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1	0102-10-1000	소(종우/젓소)
2	0102-10-2000	소(종우/육우)
3	0102-10-9000	소(종우/기타)
4	0103-10-0000	돼지(종돈)
5	0105-11-1000	닭(185g 이하/종계)
6	0105-91-1000	닭(185g 이상/종계)
7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이분도체)
8	0201-2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채 절단)
9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 것)
10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11	0202-20-0000	쇠고기(냉동/뼈채 절단)
12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없는 것)
13	0203-21-0000	돼지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14	0203-22-0000	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어깨살/뼈채절단)
15	0203-29-0000	돼지고기(냉동/기타)
16	0207-21-0000	닭고기(미절단/냉동)
17	0207-41-1000	닭고기(절단/간장제외/냉동)
18	0301-99-4000	돔(활어)
19	0301-99-9050	농어(활어)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20	0301-99-9070	미꾸라지(활어)
21	0303-79-3000	갈치(냉동)
22	0303-79-4000	돔(냉동)
23	0303-79-6000	조기(냉동)
24	0303-79-9090	홍어(냉동)
25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26	0307-49-1020	오징어(냉동)
27	0307-59-1020	낙지(냉동)
28	0402-10-101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0.5% 이하)
29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30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31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2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3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4	0402-91-1000	무당연유
35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36	0402-99-1000	가당연유
37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38	0403-90-1000	버터밀크
39	0404-10-1000	유장분말
40	0404-10-9000	유장(유장분말 이외)
41	0405-00-1000	버터(밀크에서 얻어진 것)
42	0405-00-900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와유(버터이외)
43	0408-99-0000	조란(껍질 붙지 않은 것/건조한 것 이외) * 닭의 것
44	0409-00-0000	천연꿀
45	0506-90-2000	꿀분
46	0511-91-2000	어류의 웨이스트
47	0511-99-9010	잠종
48	0602-20-1000	사과나무
49	0602-20-2000	배나무
50	0602-20-3000	복숭아나무
51	0602-20-6000	곶나무
52	0602-99-9030	뽕나무
53	0701-10-0000	감자(종자용)
54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55	0703-10-1000	양파(신선·냉장)
56	0703-20-0000	마늘(신선·냉장)
57	0709-51-2000	양송이
58	0709-51-4000	영지버섯
59	0709-51-9000	기타버섯
60	0709-60-0000	고추류(신선·냉장)
61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
62	0711-90-2000	버섯(일시저장)
63	0711-90-5090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의 것)
64	0712-20-0000	양파(건조)
65	0712-30-1020	양송이(건조)
66	0712-30-1040	영지버섯(건조)
67	0712-30-1090	기타버섯(건조)
68	0712-90-1000	마늘(건조)
69	0712-90-2090	기타채소(단옥수수)
70	0713-31-1000	녹두(건조/종자용)
71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72	0713-32-1000	팥(건조/종자용)
73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74	0714-10-1000	매니옥(신선)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75	0714-10-2010	매니옥 칩(건조)
76	0714-10-2020	매니옥 펠리트(건조)
77	0714-10-2090	매니옥(칩·펠리트 이외/건조)
78	0714-20-1000	고구마(신선)
79	0714-20-2000	고구마(건조)
80	0714-20-9000	고구마(신선·건조 고구마 이외)
81	0714-90-9000	서류(매니옥·고구마·칩뿌리 이외)
82	0802-31-0000	호두(탈각하지 아니한 것)
83	0802-32-0000	호두(탈각한 것)
84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85	0802-40-2000	밤(탈각한 것/신선·건조)
86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87	0802-90-1020	잣(탈각한 것/신선·건조)
88	0805-10-0000	오렌지(신선·건조)
89	0805-20-1000	감귤(신선·건조)
90	0805-20-9000	맨더린류(감귤 이외/신선·건조)
91	0805-90-0000	감귤류(오렌지·맨더린류·레몬·그레이프 푸루트 이외/신선·건조)
92	0808-10-0000	사과(신선)
93	0810-90-3000	대추(신선)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94	0813-40-2000	대추(건조)
95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3kg 이하 포장)
96	0902-20-0000	녹차(기타/발효하지 아니한 것)
97	0904-20-1000	고추(건조/분쇄하지 아니한 것)
98	0904-20-2000	고추(건조/분쇄한 것)
99	0910-10-0000	생강
100	1002-00-0000	호밀(종자용)
101	1003-00-1000	맥주맥
102	1003-00-9010	겉보리
103	1003-00-9020	쌀보리
104	1003-00-9090	보리(맥주맥·겉보리·쌀보리 이외)
105	1004-00-0000	귀리(종자용)
106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107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108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109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사료용·팝콘용 이외)
110	1006-10-0000	벼
111	1006-20-1000	메현미
112	1006-20-2000	찰현미
113	1006-30-1000	멥쌀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114	1006-30-2000	참쌀
115	1006-40-0000	쇄미
116	1007-00-0000	수수(종자용)
117	1008-10-0000	메밀
118	1008-20-1000	조(종자용)
119	1008-90-0000	곡물류(메밀·조·카나리시드 등 이외)
120	1102-30-0000	쌀가루
121	1102-90-1000	보리가루
122	1102-90-9000	곡분(쌀·호밀·옥수수·밀·메슬린·보리가루 이외)
123	1103-11-0000	밀(분쇄물 및 조분)
124	1103-12-0000	귀리(분쇄물 및 조분)
125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 및 조분)
126	1103-14-0000	쌀(분쇄물 및 조분)
127	1103-19-1000	보리(분쇄물 및 조분)
128	1103-19-9000	곡물(기타/분쇄물 및 조분)
129	1103-21-0000	밀(펠리트)
130	1103-29-1000	쌀(펠리트)
131	1103-29-2000	보리(펠리트)
132	1103-29-9000	곡물(기타/펠리트)
133	1104-11-0000	보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134	1104-12-0000	귀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35	1104-19-1000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136	1104-19-9000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137	1104-21-0000	보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38	1104-22-0000	귀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39	1104-23-0000	옥수수(압착·플레이크 이외)
140	1104-29-1000	울무(압착·플레이크 이외)
141	1104-29-9000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이외)
142	1105-10-0000	감자(분과 조분)
143	1105-20-0000	감자(압착·플레이크 및 펠리트)
144	1107-10-0000	맥아(볶지 아니한 것)
145	1107-20-1000	맥아(볶은 것/훈연한 것)
146	1108-11-0000	밀 전분
147	1108-12-0000	옥수수 전분
148	1108-13-0000	감자전분
149	1108-14-0000	매니옥 전분
150	1108-19-1000	고구마 전분
151	1108-19-9000	전분(밀·옥수수·감자·매니옥·고구마 이외)
152	1108-20-0000	이눌린
153	1201-00-0000	대두(파쇄 여부 불문)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154	1202-10-0000	낙화생(미탈각)
155	1202-20-0000	낙화생(탈각)
156	1207-40-0000	참깨
157	1211-20-1100	수삼
158	1211-20-1210	백삼(본삼)
159	1211-20-1220	백삼(미삼)
160	1211-20-1240	백삼(잡삼)
161	1211-20-1310	홍삼(본삼)
162	1211-20-1320	홍삼(미삼)
163	1211-20-1330	홍삼(잡삼)
164	1211-20-2210	홍삼분
165	1211-20-2220	홍삼 타블렛·캡슐
166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타블렛·캡슐 이외)
167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68	1211-20-9200	인삼종자
169	1211-20-9900	인삼(인삼근·분말·잎·줄기·종자 이외)
170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71	1214-90-9000	기타 사료용 식품(알팔파 베일 이외)
172	1302-19-1210	홍삼정
173	1302-19-1220	홍삼정분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174	1302-19-1290	홍삼엑스(홍삼정·홍삼정분 이외)
175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76	1605-90-1070	골뱅이(밀폐용기에 넣은 것)
177	1605-90-2020	골뱅이(훈제한 것/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178	1605-90-9030	골뱅이(기타 조제)
179	1702-10-1000	유당
180	1702-90-1000	인조꿀
181	1901-20-1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쌀가루의 것)
182	1901-20-2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보리의 것)
183	1901-20-9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84	1901-20-9020	기타(보리의 것)
185	1901-90-9091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186	1901-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87	1902-19-2000	당면
188	2003-10-3000	양송이(조제)
189	2003-10-9000	버섯류(조제)
190	2008-11-9000	낙화생조제품(피넛버터 이외)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191	2009-11-1000	오렌지쥬스(냉동/농축)
192	2009-11-9000	오렌지쥬스(냉동/농축 이외)
193	2009-19-1000	오렌지쥬스(냉동 이외/농축)
194	2009-19-9000	오렌지쥬스(냉동 이외/농축 이외)
195	2009-30-9000	감귤류쥬스(단일 감귤류쥬스/레몬·라임 이외)
196	2103-90-9040	메주
197	2106-90-3021	홍삼차
198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199	2202-90-1000	인삼음료
200	2207-10-900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콜(조주정 이외/알콜 용량 80 % 이상/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201	2308-90-0000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도토리·마로니에 열매 이외/아몬드 핵밀·면실피 이외)
202	2301-10-1000	육, 설육의 분, 조분, 펠리트(비식용)
203	2301-20-1000	어분
204	2301-20-9000	수생동물의 분
205	2306-90-1000	참깨 유박
206	2309-90-1090	기타 배합사료(대용유의 것)
207	2309-90-2010	보조사료(무기물·광물질 이외)
208	2309-90-2020	보조사료(향미제 주원료)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209	2309-90-2090	보조사료(무기물·광물질·향미제 이외 주원료) * 수입자동승인품목 이외
210	2309-90-9000	사료용 조제품(개·고양이용 이외/배합사료·단미·보조사료·사료첨가제 이외)
211	3102-10-0000	요소
212	3505-10-3000	배소전분
213	3505-10-400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
214	3505-10-500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
215	3505-10-9000	기타 변성전분(기타)
216	3505-20-1000	전분 글루
217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
218	3505-20-9000	기타 글루
219	5001-00-0000	누에고치
220	5002-00-1010	생사(20데시텍스 이하)
221	5002-00-1020	생사(백잠사/20데시텍스 초과 25.56데시텍스 이하)
222	5002-00-1030	생사(백잠사/25.56데시텍스 초과 28.89데시텍스 이하)
223	5002-00-1040	생사(백잠사/28.89데시텍스 초과 36.67데시텍스 이하)
224	5002-00-1050	생사(백잠사/36.67 데시텍스 초과)
225	5004-00-0000	견사

남북한 경제협력관련 각종 서식

- ① 북한주민 접촉 및 북한 방문관련 서식
- ② 남북교역관련 서식
- ③ 협력사업관련 서식
- ④ 사무소설치관련 서식
- ⑤ 남북협력기금지원관련 서식

북한주민 접촉 및 북한 방문관련 서식

- 북한주민접촉신청서
-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 방문기간연장신청서
- 북한방문신고서
- 북한방문결과보고서
- 출입신고서
- 왕래주민휴대품신고서
- 휴대품보관증

〈앞면〉

북한주민접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	-----

①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전화 :)			
	직업	(전화 :)			
② 피접촉 예정인 인적사항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및지위	신청인과의 관계
③ 접촉목적					
④ 접촉경위					
⑤ 접촉일정 및 장소					
⑥ 접촉방법					
⑦ 접촉경험 (3년 이내)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신청하며, 북한주민과의 접촉중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공공복리 및 남북한관계개선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p> <p>첨부서류 : 뒷면</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㉞</p>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원장관 귀하</p>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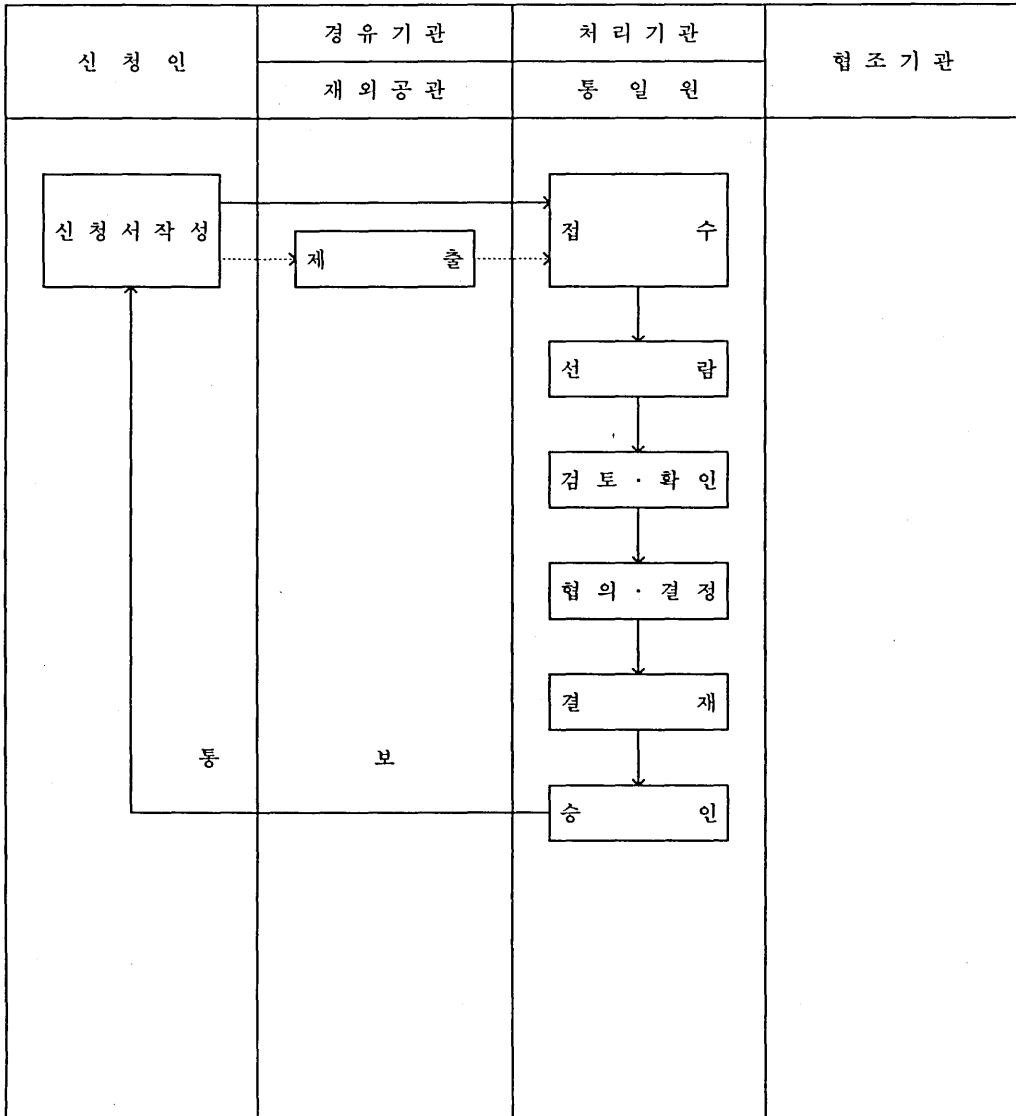
11022-00911민
90.10.12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80g/m²

첨부서류 : 1. 신원진술서

2.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① 보고인 인적사항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연락처	(전화:)			
	직업	(전화:)			
② 피접촉인 인적사항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및지위	신청인과의 관계
③ 접촉목적					
④ 접촉일시 및 장소					
⑤ 접촉경위					
⑥ 접촉방법					
⑦ 접 촉 결 과 개 요					
<div data-bbox="257 1197 514 1236" data-label="Text"> <p>※ 세부내용 별지작성</p> </div> <div data-bbox="214 1275 1213 1371" data-label="Text">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div> <div data-bbox="571 1391 856 1429" data-label="Text"> <p>년 월 일</p> </div> <div data-bbox="799 1449 1142 1487" data-label="Text"> <p>제 출 자: ㉞</p> </div> <div data-bbox="514 1497 913 1545" data-label="Text"> <p>통 일 원 장 관 귀 하</p> </div>					

11022-01011민
90.10.12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80g/m²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앞면)

						처리기간	30일		
①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한자:)			성별	남·여	사 진 3.5cm × 4.5cm		
	주민등록번호				신장	cm			
	주소·연락처					(전화:)			
	직업	소속		직위	(전화:)				
② 동반자녀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신장	사 진 2.5cm × 3cm	사 진 2.5cm × 3cm		
					cm				
					cm				
③ 방문대상 자 인적 사항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및직위	관계		
④ 방문목적									
⑤ 방문경위 (초청장, 방문알선및중개인포함)									
⑥ 방문예정 일정 (일시, 방문지역)									
⑦ 방문및귀 환예정경로									
⑧ 방문경험 (과거 3년 이내)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발급을 신청하며, 이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기간 및 그 전후에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공공복리 및 남북한 관계개선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p> <p>첨부서류 : 뒷면</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㉞</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원 장 관 귀 하</p> <table border="1" style="float: right;"> <tr> <td>수 수 료</td> </tr> <tr> <td>없 음</td> </tr> </table>								수 수 료	없 음
수 수 료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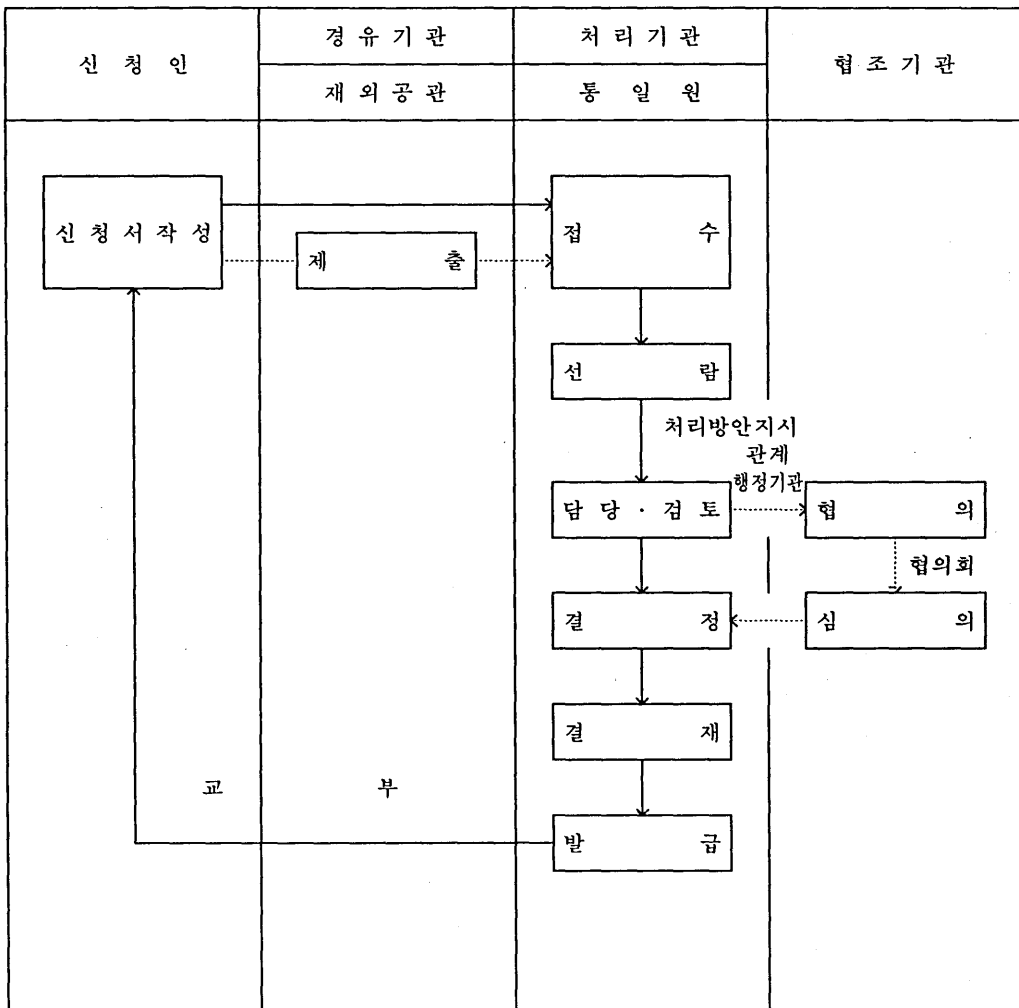
11022-001111민
90.10.12 승인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80 g/m²

첨부서류 : 1. 신원진술서

2.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4매 포함)
3. 병역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해당자에 한함)
4.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5.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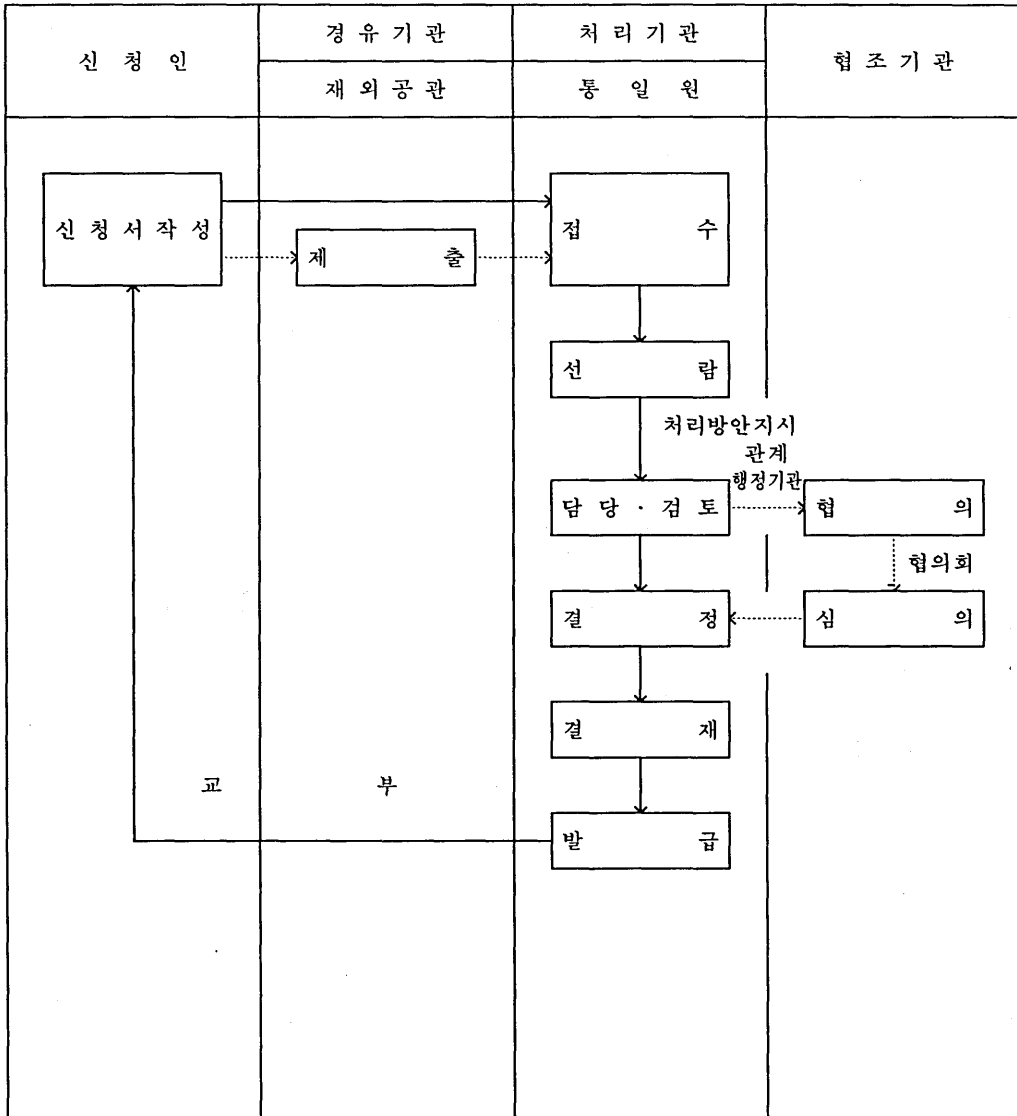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첨부서류 : 1.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4매 포함)

2.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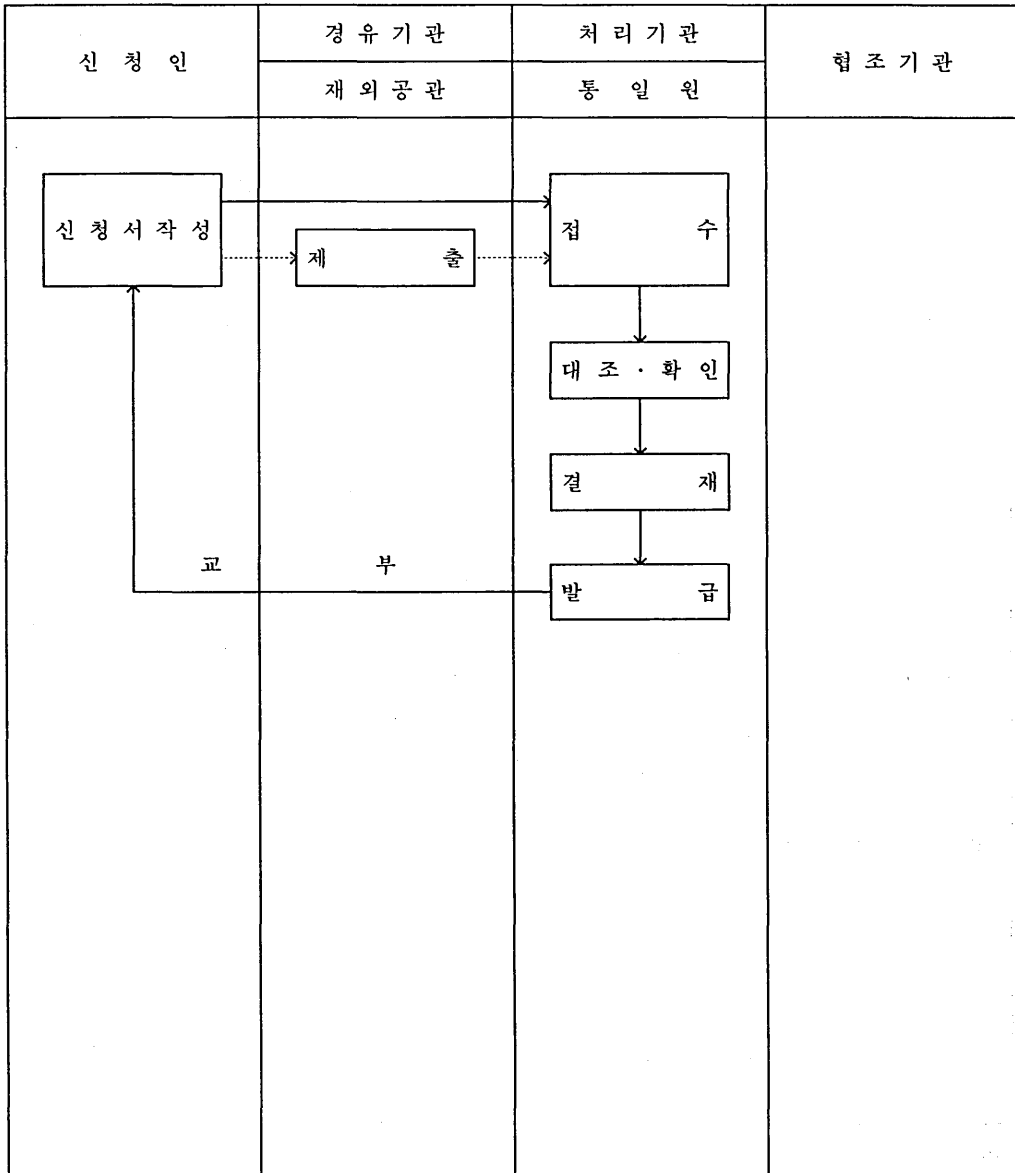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첨부서류 : 1. 증명서 재발급용 사진 2매

2.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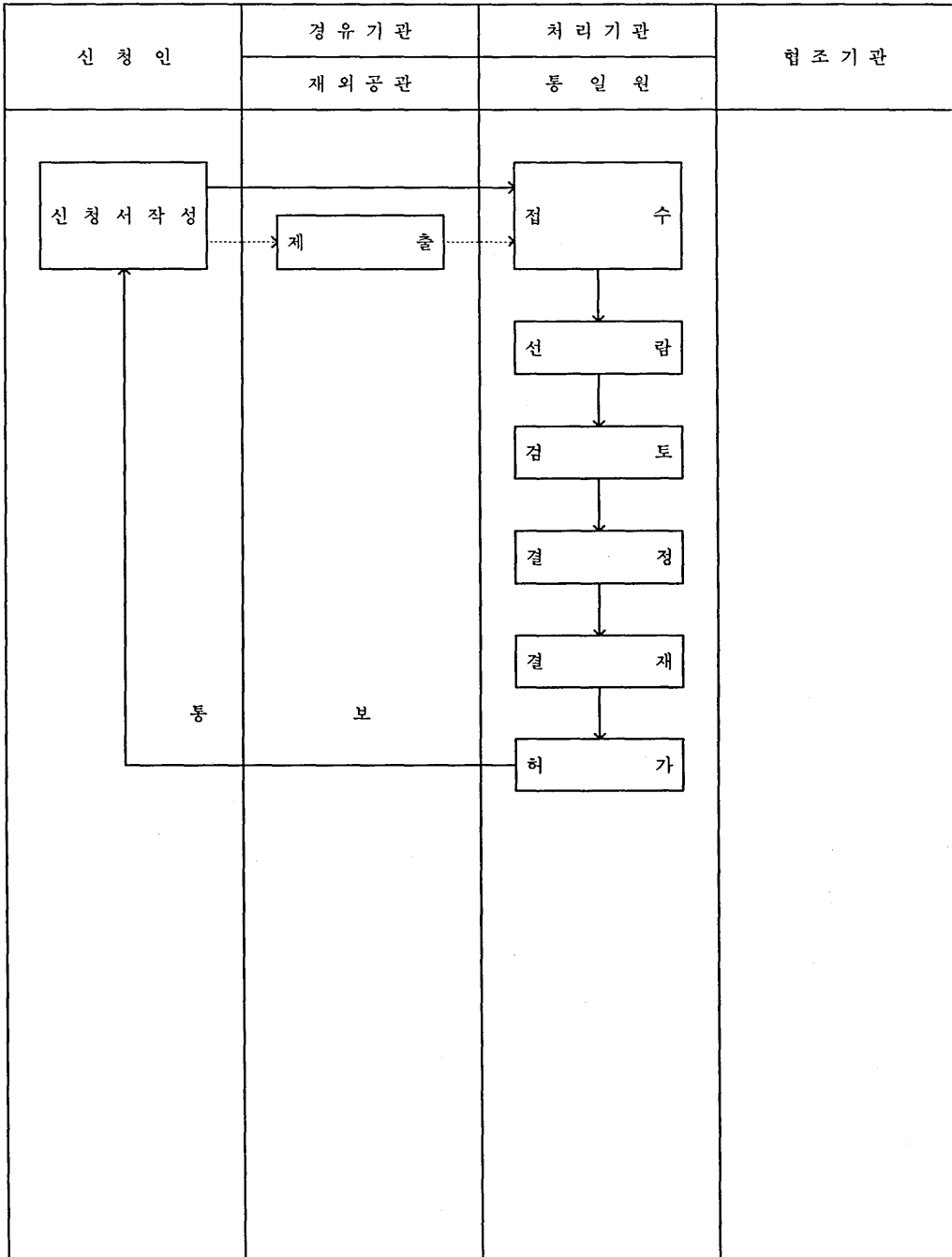
방문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4일
------	-----

① 인적사항	성명	(한자:)	성별	남·여
	구증명서번호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방문지			
② 연장기간				
연장전			연장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개월)]			[일 (개월)]	
③ 연장사유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④</p>				
통일원장관귀하				수수료
				없음

11022-00611민
90.10.12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80g/m²



북 한 방 문 신 고 서

신고번호: _____ 신고일자: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① 신 청 자	성 명		성별	남 · 여	
	생 년 월 일				
	주 소 · 연 락 처		전화번호		
	직 장		전화번호		
② 방북증명서발급번호					
③ 방 문 경 위 (입북비자획득등)					
④ 방문목적(사유)					
⑤ 방문기간(일정)					
⑥ 방 문 경 로 (경유지포함)					
⑦ 여행지내 또는 접촉인물	성 명	나이	거 주 지	소속 및 직위	관 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을 신고하며,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국가이익에 해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서류: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 사본 1부 또는 초청장 원본 1부

신 청 인 : _____ (인) (또는 서명)

통 일 원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 *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합판 사진
- * 신고번호는 공관별 전문 전치부호-신고년도(마지막 두자리)
 - 공관별 신고접수·순위로 공관에서 기재
 - (예 : 주한미대사관 US-88-001. 주일대사관 JA-88-125)

북한 방문 신고서						
신고번호 :			신고일자 : 년 월 일			
① 신 고 자	성 명			성 별	남 · 여	
	생 년 월 일					
	주 소 · 연 락 처			전 화 번 호		
	직 업			전 화 번 호		
② 여 권 번 호					여 권 유효 기 간	
③ 방 문 경 위 (입북비자획득등)						
④ 방 문 목 적 (사 유)						
⑤ 방 문 기 간 (일 정)						
⑥ 방 문 경 로 (경 유 지 포 합)						
⑦ 여 행 지 내 연 고 자 또 는 접 촉 인 물	성 명	나 이	거 주 지		소 속 및 직 위	관 계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 방문을 신고하며,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국가이익에 해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p> <p>첨부서류 :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p> <p style="text-align: right;">신 고 인 : ⓐ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대 사 (총 영 사) 귀 하</p>						

11022-01011번
90.10.12 승인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80 g/m²

북한방문결과보고서

① 보고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사진 3cm×4cm
	주소·연락처	(전화:)				
	직업	(전화:)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② 방문대상자 (방문기관) (3인부터는 별지작성)	성명	소속 및 직위		기타		
③ 방문목적						
④ 출발일				⑤ 귀환일		
⑥ 방북신고미필사유						
⑦ 방문및귀환경로						
⑧ 방문일정						
년 월 일	방문지역		활동내용 및 면담자			
※ 세부활동내용 및 참고사항은 별지작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년 월 일						
작성자:					㉠ (또는 서명)	
대 사 (총 영 사) 귀 하						

11022-00811민
90.10.12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80 g/m²

출 입 신 고 서

- 깨끗하고 바르게 적어 주십시오.
- □속은 적지 마십시오.
- 방문증명서 속에 보관하십시오.

이름	한자이름		
생년월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년 월 일 </div>	주민등록번호후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div>	성별 남 · 여	
방문증명서번호	직장 및 직위 직장명: 직 위:		
거주지 연락처			
주소 :	전화번호		
방문지 연락처			
주소 :	전화번호		
이름 :			
방문목적	방문예정기간		
공용란			

11022-01111민
90.10.12 승인

84mm × 144mm
NCR88 g / m²

서면신고대상물품

해당란에 (○)표

소 지 물 품	있음	소 지 물 품	있음
총포, 도검, 화약등 무기류		국헌, 공안, 풍속을 해할 물품류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류		화폐, 증권의 위조, 변조, 모조품	
동물, 식물류 등 검역대상 물품		무선통신용 송·수신기	
35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화폐 등			
신고금액 :			

위 신고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고인 서명 :

검사대 번호 :	검 사 자 :
----------	---------

휴대품보관증

보관증번호 :

화물 Tag번호 :

성명		생년월일	199				
		국적					
방문증명서번호		방문기간					
주소							
남북한 왕래주민의 휴대품 검사 및 반출입 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물품을 보관합니다.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담</td> <td style="text-align: center;">당</td> </tr> <tr> <td colspan="2" style="height: 30px;"></td> </tr> </table>	담	당			19		
담	당						
서울세관장							
포장종류	수량	품명	중량	비고			
계							

보관물품인도내역			
보관증번호		인도물품	
화물 Tag 번호			
출입국일시		성명 및 서명	(인)

남북교역관련 서식

-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
- 대북한반출승인신청서
- 반출입승인신청서
- 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 교역보고서
-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
-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

(용)

처리기간	20일
------	-----

①반입자(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 등록번호		⑤송화인		
	(인)	⑥결제조건		
②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 신용장(), 추심어음() 송금환() 기 타()		
		금 액		
③원산지		결제기간		
④선적항		⑦가격조건		
⑧HS부호	⑨품명 및 규격	⑩단위및수량	⑪단가	⑫금액
⑬승인조건				
⑭승인유효기간				
⑮승인번호				
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199				
통 일 원 장 관				

11022-01011번
90.10.12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80g/m²

대 북 한 반 출 승 인 신 청 서

(용)

처리기간 20일

① 반출자(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 등록번호		⑤ 수 취 인
(인)		⑥ 결제조건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 신용장(), 추심어음() 송금환() 기 타()
		금 액
③ 원 산 지		결 제 기 간
④ 선 직 항		⑧ 가격조건
⑤ 도 착 항		
⑨ HS부호	⑩ 품 명 및 규 격	⑪ 단위및수량 ⑫ 단 가 ⑬ 금 액
⑭ 승 인 조 건		
⑮ 승인유효기간		
⑯ 승 인 번 호		
<p>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9</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원 장 관</p>		

11022-01011번
90.10.12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80g/㎡

반 출 입 승 인 신 청 서

(용)

처리기간	20일
------	-----

① 신청인(상호·주 소·성명·전화) 무 역 업 등록번호			⑦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
(인) 반			⑧ 결제조건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송금환() 추심어음(), 기타()
② 위탁자(상호·주 소·성명·전화) 사 업 자 등록번호			금 액
			결제기간
			⑨ 가격조건
③ 승 화 인			⑩ 결제조건
반 출		반 입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송금환() 추심어음(), 기타()
④ 원 산 지			금 액
⑤ 선 적 항			결제기간
⑥ 도 착 항			⑪ 가격조건
반출물품의 명세			
⑫ HS부호	⑬ 품 명 및 규 격	⑭ 단위및수량	⑮ 단 가 ⑯ 금 액
반입물품의 명세			
⑰ HS부호	⑱ 품 명 및 규 격	⑲ 단위및수량	⑳ 단 가 ㉑ 금 액
㉒ 승 인 조 건			
㉓ 승인유효기간 반출 :		반입 :	
㉔ 승 인 번 호			
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승인합니다.			
199 통 일 원 장 관			

11022-01011민
90.10.12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70g/m²

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	-----

①신청인(상호·주 소·성명·전화 무 역 업 등록번호)	②변경전 승인일자
	③변경전 승인번호
	④승인사후관리은행명
⑤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시오.)	
변 경 전	변 경 후
⑥승 인 조 건	
⑦승인유효기간	
⑧승 인 번 호	
<p>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9</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원 장 관</p>	

11022-01011번
90.10.12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70g/m²

교역보고서

보 고 자	①상 호		②무역업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대표자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보고사유				
보 고 개 요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보 고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원 장 관 귀 하</p>				
<p>구비서류 : 1. 반출·입 실적 1부.</p> <p style="padding-left: 40px;">2. 보고개요의 상세한 내용 1부</p>				

수송장비은행승인신청서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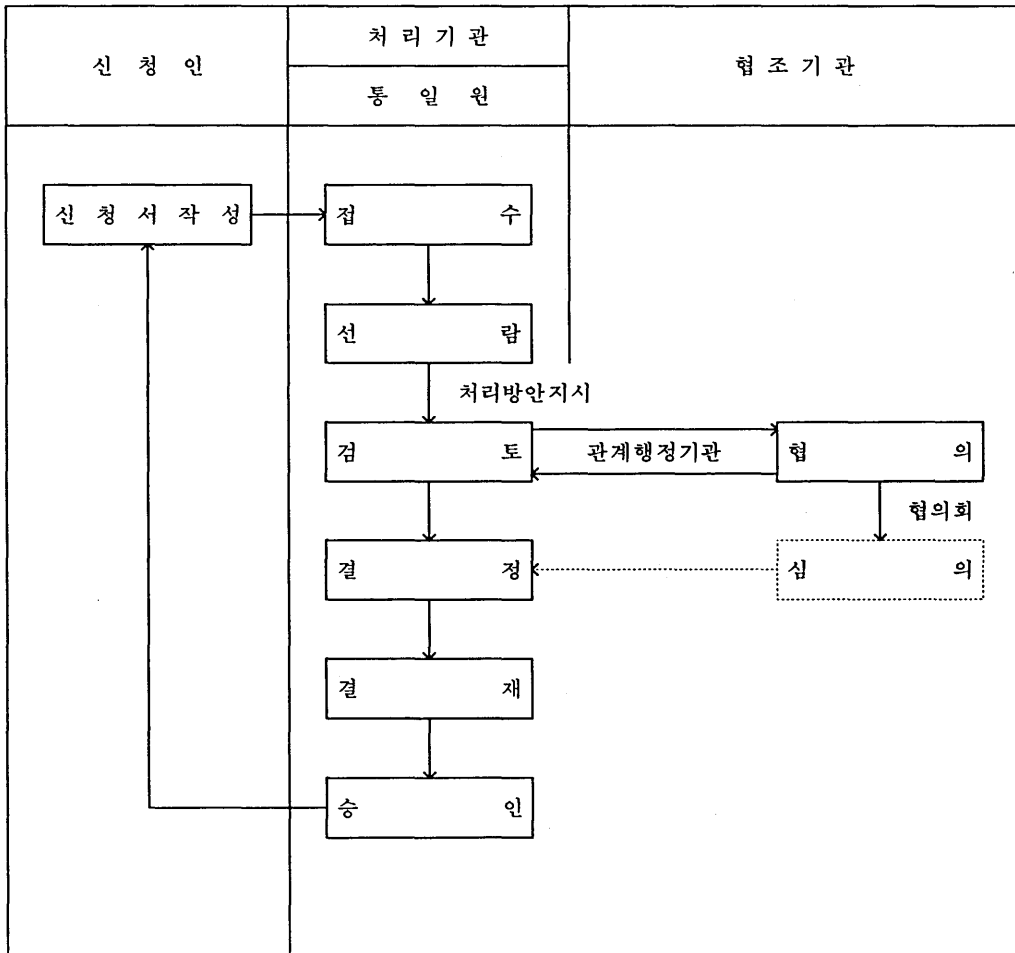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신분증서번호)			
수송장비의종류		수송장비명칭			
운행목적					
운행기간					
운행예정노선					
운행계획개요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장비은행의 승인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뒷면</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신청인 : (인)</p>					
<p>통 일 원 장 관 귀 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없음</td> </tr> </table>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1313-02511민
94.5.31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6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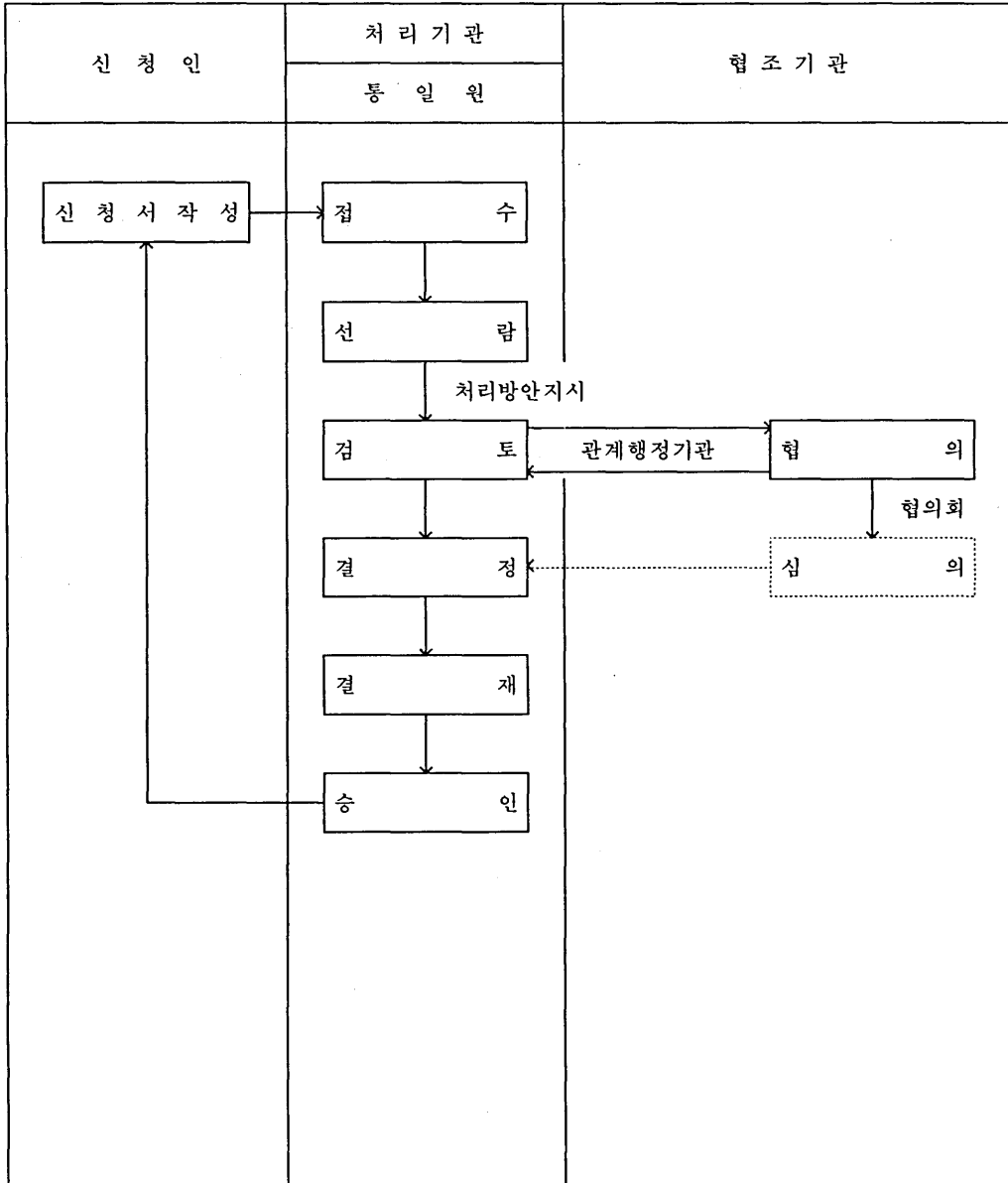
- 첨부서류 : 1. 운행계획서(운행경위를 포함한다)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제원 내역서(사용할 수송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보할 수송장비의 제원과 확보방법 및 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부
3.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통일원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영 제43조 제5호의 사항을 징빙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각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첨부서류 1. 변경사항 해당서류 각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협력사업관련 서식

-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 협력사업자승인증
- 협력사업자변경승인신청서
- 협력사업승인신청서
- 협력사업변경승인신청서
- 협력사업보고서

승인번호 제 호

협력사업자승인증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구분

주 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협력사업자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원 장 관 (인)

협력사업자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	-----

① 단체명(상호)		② 승인 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사항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원 장 관 귀 하</p>			
<p>구비서류 : 1. 구협력사업자승인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사유서 1부 4. 사업구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p>			

협력사업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	① 단 체 명 (상 호)		② 변경전승인번호
청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자	⑤ 대 표 자 성 명		⑥ 주 민 등 록 번 호
사	⑦ 사 업 명		
업	⑧ 승 인 일 자		
⑨ 변 경 내 용 개 요			
변 경 전		변 경 후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협력사업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원 장 관 귀 하</p>			
<p>구비서류 : 1. 협력사업자승인증 2. 사업추진 개요 1부 3. 변경된 사업의 추진계획서 1부 4. 변경사유서 1부 5. 변경된 사업이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p>			

11022-01011민
90.10.12 승인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70 g/m²

협 력 사 업 보 고 서

보	① 단체명(상호)		② 협력사업자승인번호	
고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자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사	⑦ 사 업 명			
업	⑧ 승인(변경)일자	⑨ 승인번호		
보 고 사 유				
보 고 개 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인)				
통 일 원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보고개요에 대한 상세한 내용				

사무소설치관련 서식

- 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
- 사무소설치승인증
- 사무소설치승인내용변경신고서
- 사무소폐지신고서
- 상주기간연장승인신청서

사무소 설치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 상 호		② 설립년월일
	③ 대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업 종		
사 무 소	⑦ 설 치 목 적		
	⑧ 사 무 소 명	<국문> <영문>	
설 치 내 역	⑨ 대표자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소 재 지		
	⑫ 업무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⑬ 주 재 원 수	본사파견: 명	현지고용: 명
	⑭ 영 위 업 종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무소 설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 일 원 장 관 귀 하			
<첨부서류> 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 1부. 2. 업무활동계획서(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 3.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경비조달계획서 및 필요물품 반출명세서 4.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결과 5. 재무부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 6.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 수 료 없 음

사무소 설치 승인증

① 상 호		② 대표자 성명	
③ 업 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무소 설치를 승인합니다.

⑥ 설치목적		⑦ 승인 번호	
⑧ 사무소명	〈국문〉 〈영문〉	⑨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⑩ 소재지			
⑪ 주재원수	본사파견 : 현지고용 :	⑫ 활동 내용	
⑬ 상주기간	년 (년 월 일까지)	⑭ 승인 일	년 월
⑮ 승인조건	일		

년 월 일

통 일 원 장 관

사무소설치승인내용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 청 자	① 상 호		② 설립년월일	
	③ 대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사 무 소	⑥ 사 무 소 명		⑦ 승 인 번 호	
	⑧ 소 재 지			
⑨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통 일 원 장 관 귀 하				
위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고수리함.				
		신고수리번호		
		신고수리일자		
신고수리기관: 통일원 장관				수 수 료
				없 음

사 무 소 폐 지 신 고 서

			처기기간	15일		
신 청 인	① 상 호		② 설립년월일			
	③ 대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⑥ 사무소명					
	⑦ 소재지					
	⑧ 업 종					
⑩ 폐지사유						
⑪ 폐지시기	년 월 일					
<p>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원 장 관 귀 하</p>						
<p><첨부서류>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p>				<table border="1"> <tr> <td>수 수 료</td> </tr> <tr> <td>없 음</td> </tr> </table>	수 수 료	없 음
수 수 료						
없 음						

남북협력기금지원관련 서식

- 주민왕래지원자금 신청서
- 주민왕래지원자금 사용보고서
-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신청서
-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변경신청서
-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사용보고서
-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 사전협의를서
-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 신청서
-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 조건변경신청서
- 손실보조약정 신청서
- 손실보조약정 변경신청서
- 손실보조 신청서
- 채무보증신청서
-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신청서
- 미결제채권인수신청서
- 북한원화매매신청서

- 첨부서류 : 1. 방문자 명단(방문자가 4인 이상인 경우)
2. 방문계획(방문계획이 복잡한 경우)
 3. 기금사용계획서 1부
 4. 방문자의 주민왕래지원자금 신청위임장(대리인에 한함)
 5.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문화
 학술
 체육

협력지원자금신청서

① 신청인	단체명 (성명)	한글: 한자:	대표자
	주소 연락처		
② 협력사업자 승인번호			
③ 협력사업 상대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주소	(TEL)	
	연락처	(FAX)	
④ 협력사업 개요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장소		
⑤ 자금신청 내용	총소요자금		
	예상수익금		
	자금신청액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문화·학술·체육) 협력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1. 사업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1부
 4. 사업상대자와의 협의서 사본 1부
 5. 자금사용계획서 1부
 6.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③

통일원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1106-022-00111민
91. 4. 10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80g/m²

문화
 학술
 체육

협력지원자금변경신청서

① 신청인	단체명 (성명)	한글: 한자:	대표자	
	주소			
	연락처			
② 협력사업 승인번호				
③ 변경신청내용				
변경전		변경후		
④ 변경신청사유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문화·학술·체육) 협력지원자금변경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1. 사업변경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변경승인신청서 1부 2. 변경후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 관련 서류 또는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신청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통일원장관 귀하</p>				
				수수료
				없음

1106-022-00111민
91. 4. 10승인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80 g /㎡

문화
 학술
 체육

협력지원자금사용보고서

① 보고인	단체명 (성명)	한글: 한자: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협력사업자 승인번호		협력사업승인 (변경)번호
② 협력사업 상대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② 협력사업기간			
④ 협력사업 주요실적			
⑤ 자금사용총액		⑥ 협력사업수익금	
⑦ 지원자금수령액			
⑧ 지원자금사용액			
⑨ 지원자금불용액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문화·학술·체육) 협력지원자금 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추진실적 2. 자금사용명세서 및 주요 증빙서 3.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보고인	인
통일원장관 귀하			

1106-022-00111민
91. 4. 10승인

210mm x 297mm
인쇄용지(특급)80g/m²

첨부서류 : 1. 사업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4. 손실보조 약정신청액 산출명세표

5. 신청인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6. 제작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7.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8.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9.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채 무 보 증 신 청 서

① 의 회 인	상 호 및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TEL)		
② 채무보증 신청내용	보 증 한 도		보 증 목 적	
	수 혜 자			
	보 증 기 간	- (동산 년 월)		
③ 사 업 명				
④ 보증대상 채 무	대 출 은 행		대 출 금 액	
	대 출 이 율		대 출 기 간	
	원 리 금 상 환 방 법			
	상 황 재 원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이사회기결의서 1부				
3. 담보제공계획서				
4. 차주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5.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6.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통 일 원 장 관 귀 하				③
				수 수 료
				없 음

1106-022-00111민
91. 4. 10승인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80g/㎡

북한원화 매매 신청서

①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TEL)		
	연락처	(FAX)		
② 인수신청 금액	북한원화	금	()
	적용환율			
	원화	금	()
③ 보유경위				
④ 매각신청 금액	원화	금	()
	적용환율			
	북한원화	금	()
⑤ 북한원화 사용계획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원화의 (인수·매각)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50%; margin: 0 auto;">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30%; margin: 0 auto;"> 신청인 ④ </div>				
통일원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1106-022-00111민
91. 4. 10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80 g/m²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신청서

①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TEL)		
	연락처	(FAX)		
② 지원자금 신청내용	금액		지원대상	<input type="checkbox"/> 용자자금
			구분	<input type="checkbox"/> 기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2항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용자자금지원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1. 용자 취급명세서
 2. 자금지원 신청조건
 3.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㉔

통 일 원 장 관 귀 하

수수료

없음

1106-022-00111민
91. 4. 10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80g/㎡

南北經濟交流協力實務

印 刷：1995年 3月 日

發 行：1995年 3月 日

發行處：統一院 交流協力局

TEL：736-7205

印刷處：陽東文化社

통 협 95-3-15 <비매품>

